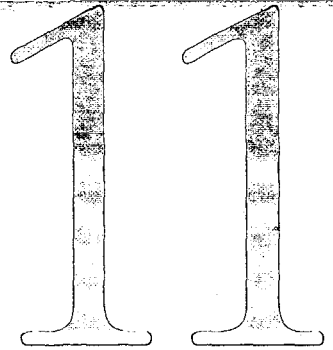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현안분석

사회복지를 위한 민간참여의 활성화 및

재원조달방안

고금리의 원인과 대책

지역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특별기획 / 노벨경제학상

정책흐름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 및 세부추진계획

재정통계

소득세관련 통계(1)

권두칼럼

2 OECD 가입과 한국경제 / 홍범교

현안분석

6 사회복지를 위한 민간참여의 활성화 및 자원조달방안 / 손원의

20 고금리의 원인과 대책 / 이인표

34 지역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 장근호

특별기획 / 노벨경제학상

50 제임스 멀리스의 인간적 면모와 학문적 업적 / 나성린

57 윌리엄 비크리와 그의 학문세계 / 노영훈

67 노벨경제학상을 말한다 / 최 광

정책흐름

77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

93 199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103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

재정통계

110 소득세관련 통계(1)

OECD 가입과 한국경제

홍범교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드디어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결정되어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1980년대 말 우리나라의 OECD 가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을 준비해 온 과정을 생각할 때,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이 그 동안 쏟은 노력의 결실이며 동시에 새로운 노력을 요구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OECD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복구를 위하여 조직된 유럽경제협력기구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서 선진국 클럽으로 불려왔다. 1961년에 발족한 이래 1973년 뉴질랜드가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21년만인 1994년 멕시코가 2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최근 2년 사이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가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OECD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한 회원국들로 구성되며 거시경제정책의 협의 조정, 경제 각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의 촉진, 자유무역의 확대 발전, 외국인 투자 촉진 외에도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에너지 정책개발, 환경보호, 개발원조의 확대 등 세계경제발전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정부에서 OECD 가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때부



터 OECD 가입의 득실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고 지금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아직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OECD 가입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선진 각국의 축적된 경험 및 정보의 활용으로 선진형의 경제운용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국제경제 이슈들이 사전논의되는 OECD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경제질서의 형성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

고 사전 대응하기가 용이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다자간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쌍무협상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경제력 신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수행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OECD 예산 부담금 및 대(對) 개도국 원조 등의 재정적 부담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회원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의 거래규약이 개방화를 급속히 촉진하여 거시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기 불황국면에 접어드는 시기에 OECD에 가입함으로써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가입에 따른 득실은 가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정적인 부담과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도산

우리 경제의 규모 및 역동성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가입여부가 아니라 OECD 회원국으로서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여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다.

가능성과 거시경제의 불안정화 가능성 등 일견 실
 (失)이 더 많은 듯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규모 및 역동성,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미래의
 경기에측은 어차피 불완전한 것이고, 협상과정에 드
 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완벽한 가입시기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가입여부가 아니라 OECD 회
 원국으로서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여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정부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OECD 예산 분담금
 은 1996년 기준으로 약 30억원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생각해 볼 때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은 아
 니고, 개도국원조 역시 권고사항으로서 당장 구속력
 을 가진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력 신장
 과 더불어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개도국
 에 대한 원조를 늘려나가는 것은 지구촌의 일원로서
 서,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자본자유화와 금융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국내의 금리차에
 따른 급격한 외환 유입을 막고, 특히 단기 투기성 자
 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해 관련규약에 유보조항을 두
 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1990년대 들어 이데올로기의 퇴조는 세계적으로
 경제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시켰으며, 정
 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교통·운송수단의 발달 등은
 세계를 더욱 좁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개방화는 세계경제와의 융합이
 며, 자율화는 경제의 운용을 가장 효율적인 시장에 맡
 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OECD 가입
 은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
 다. OECD 가입은 우리 경제의 구조·관행과 선진
 국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시장경제
 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경쟁 촉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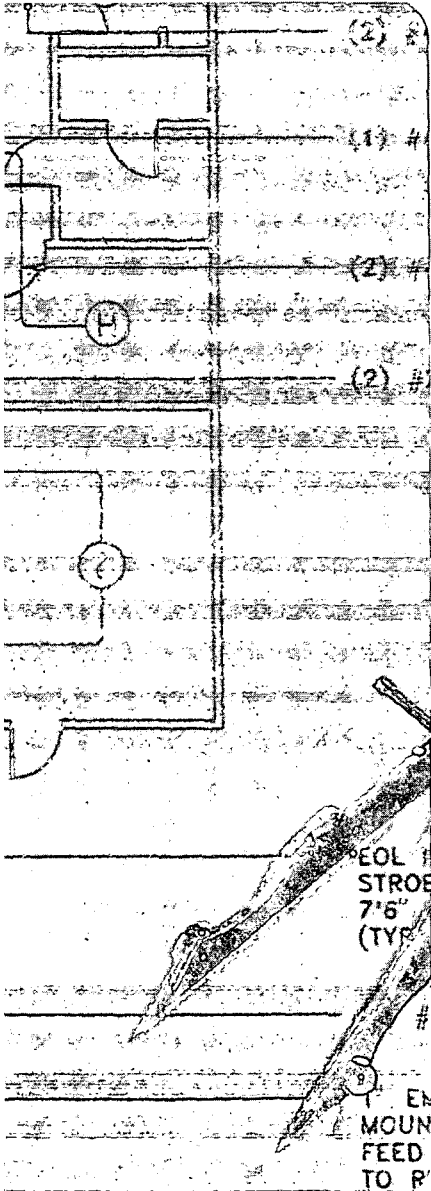
우리가 앞서 열거한 OECD 가입의 장점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경제외교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각
 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OECD 조직의 여러 활동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
 고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OECD로부터 얻
 게 될 무수한 정보를 시장경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
 는 민간부문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마
 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원칙에 의하여 어떤 혜택을 받
 을 수 있다든지, 국내에 진출한 선진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하여 체질 강화와 새로운 금융기법의 습득
 이 가능하다든지, 해외기채시장에서 높아진 신용도에
 의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든지 하
 는 등등의 구체적인 가입의 과실(果實)은 정부와 민
 간부문이 공동으로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OECD 회원국이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당장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OECD
 가 우리나라를 가입 초청한 것은 그동안 이룩해 온 우
 리의 경제성장을 인정해준 것이며,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김기**

현안분석

사회복지를 위한 민간참여의 활성화 및 자원조달방안 / 손원익

고금리의 원인과 대책 / 이인표

지역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 장근호



사회복지를 위한 민간참여의 활성화 및 재원조달방안

손원익/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980년대 후반부터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공익재단법인의 설립 및 공익재단법인에 대한 투자규모가 증가하였다.

I. 현황 및 문제의 제기

현재 우리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나 국방, 교육, 건설 등 타부문의 재정 수요를 고려할 때 중·단기간 내에 사회복지부문의 획기적인 재정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표 1> 각국의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 규모(1994년)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9.46	17.5	41.7	67.5	56.8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는 공익재단법인 설립, 자체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 또는 후원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공익재단 법인의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익재단법인 투자규모도 1992년 197억원 수준에서 1995년에는 437억원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기업에서 직접 복지시설에 후원하는 금액도 1993년 106억원에서 1994년 454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공익재단법인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대규모 기업과 재벌급 규모 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현재의 19개는 그 수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간 사업규모면에서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2~7억원 수준의 소규모 재단들이다.

〈표 2〉 복지사업 투자규모

(단위: 억원)

	1992	1993	1994	1995
투자규모	197	187	193	437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를 위한 모금활동은 사회복지사업기금, 재해의연금, 적십자회비, 어린이새생명돕기금고 등 9개 분야에서 887억원이고 기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단위에서 소규모로 후원금을 받아 사회복지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의 규모가 1994년의 경우 379억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개인·가계·기업 등이 참여하는 결연사업의 규모가 연간 100억원에 불과하고 후원대상도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에 편중되어 있다.

모금이 주로 재해 또는 대형사고 발생시나 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 주로 기업을 상대로 손쉬운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등 모금을 통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원고의 제Ⅱ절에서는 사회복지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시된 보건복지부의 정책방안을 소개한다. 제Ⅲ절과 제Ⅳ절에서는 제시된 정책방안의 주요내용인 공동모금제도와 기부금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 제Ⅴ절에서는 제시된 정책방안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목적은 민간단체가
성금의 모금 및 배분을
관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표 3〉 이웃돕기성금 등 민간모금 주요 현황(1994년)

(단위 : 억원)

모금명칭	모금주체	모금액
사회복지사업기금	보건복지부, 시·도	178
재해의연금	전국재해대책협의회	229
적십자회비	대한적십자사	256
사랑의쌀	한국기독교연합	3
MBC어린이새생명	문화방송	44
X - M A S 쌀	대한결핵협회	45
구세군 자선냄비	구세군	10
결연사업	한국복지재단 등	102
사랑의빵	한국선명회	20
계		887

자료 : 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보건복지부에 의해 제시되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은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전에는 관주도하에 이웃돕기성금의 모금 및 관리·운용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공동모금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중앙공동모금회와 특별시·직할시·도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설치한다(동 법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모금회는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중앙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역공동모금회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한다(동 법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

2.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방안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조달방법은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역할을 각 분야의 민간단체로 이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첫째, 기업의 복지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기업의 직접투자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을 기업공동복지투자 형태로 전환하여 공동모금을 관리하는 위원회는 기업의 지원의도에 부합하는 단체의 선정만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복지투자를 유도한다. 또한 공동모금에 대한 기부금을 조세감면법상 법정기부금화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소득의 7%에서 소득의 20%로 확대하도록 하는 세제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복지참여를 활성화시킨다.

둘째, 종교계의 복지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종교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종교계의 복지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셋째, 국민의 복지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행 관주도의 이웃돕기운동을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국민이 공동모금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모금활동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역별·기능별로 조직화하여 사회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의 사회복지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의식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의 산하조직으로 되어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개편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조직으로 전환하여 공동모금의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복지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앙협의회와 별도법인으로 지방에 독립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민간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조달방법이 정부기관에서 민간단체로 이전됨으로써 각 분야의 참여와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Ⅲ. 각국의 공동모금제도¹⁾

1. 공동모금의 의미

공동모금이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역사회공동모금'으로 지역사회민간 복지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자선운동을 바로잡고 사회복지사업의

1)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각국의 공동모금」에서 발췌.

공동모금의 특성은 전문화를 피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연합하여 지역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사회 단위로 연합모금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협조에 의한 공동모금의 특성은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협조에 의한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동모금회가 기부자를 대신하여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여러 단체가 각기 개별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따른 낭비와 어려움을 줄이는 데 있다. 각 단체들로부터 신청된 필요액을 심사하여 그에 따른 배분계획을 세우고 모금목표액을 공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등 공동모금회 활동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공동모금 역사 및 운영실태

1970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2171호)에 따라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구성되어 1972년 모금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다. 1980년 관주도형의 '사회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지원, 결식노인 점심제공, 재가노인봉사 등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2년부터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와 한국방송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20개의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모금기구인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에 의해 모금된 국민성금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기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 왔다. 즉, 모금활동은 민간매스컴에 의해 이루어지고 관리 및 배분은 정부가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992년도 중앙모금 상당액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에 대해 46.04%, 연말연시 위문금품으로 17.06%, 노인 및 장애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15.29%가 지출되었다.

〈표 4〉 이웃돕기운동본부 시행 성금모금 실적

(단위: 백만원, %)

	1991		1992		1993		1994		1995	
	모금액	증가율	모금액	증가율	모금액	증가율	모금액	증가율	모금액	증가율
중앙모금	3,138	3.5	3,028	3.5	3,938	30.1	4,940	25.4	5,060	2.4
지방모금	13,501	3.5	13,977	3.5	14,500	1.8	12,877	-11.2	11,406	-11.4
계	16,639	2.2	17,006	2.2	18,438	8.0	17,817	-3.4	16,466	-7.6

자료: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각국의 공동모금』, 1994.

3. 미국의 공동모금 역사 및 운영실태

미국의 공동모금 역사는 지역별로 그 유형이 나누어진다. 1887년 덴버시 자선조직협회에서 23개 회원기관 중 15개 기관이 공동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1895년까지 100개 시로 파급되었으며, 1915년 신시내티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한 공동모금을 시작하여 1927년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등 5개 도시에서 채택하였다. 기부자들의 주도로 1913년 클리블랜드에서 기부자, 모금자,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을 대표하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자선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의 공동모금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1차대전 이후 400여 개의 공동모금 기구가 설치되었고 1950년 United Fund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1970년 United Way of America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1992년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와 한국방송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20개의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모금기구인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를 결성하였다.

〈표 5〉 미국의 모금원별 모금액 및 점유율

(단위: 백만달러, %)

	1987		1988	
	모금액	비율	모금액	비율
법인 및 소사업체 근로자	1,302.6	50.1	1,426.1	51.3
법 인	598.0	23.0	650.5	23.4
비영리 및 정부 근로자	361.4	13.9	347.5	12.5
전 문 직	70.2	2.7	75.1	2.6
소 사 업 체	57.2	2.2	75.1	2.7
비 영 리 재 단	36.4	1.4	38.9	1.4
기 타	174.2	6.7	169.6	6.1
계	2,600.0	100.0	2,780.0	100.0

자료: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각국의 공동모금』, 1994.

실시기관으로는 메트로폴리탄 카운티, 카운티 등의 단위로 조직된 2,300개 이상의 지역공동모금회가 주체가 된다. 지역공동모금회는 유급직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모금활동 등 대부분의 활동이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모금은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형, 회사·공장·사업체 등과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미국의 모금활동은 형과 단체형이 병행 실시되는 기업중심형, 재단·협회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개별형, 단체형, 하는 단체형, 전국법인리더쉽 프로그램, 백만인건기대회, 전국풋볼리그 등 사 특별사업형으로 업단위로 이루어지는 특별사업형이 있다. 이 중 모금액은 기업체 단위의 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와 기업가로부터의 모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체근로자나 기업가로부터의 기금 수령기관은 각 지역사회 사정에 맞추어 선정되고 약 4만여개의 프로그 램과 서비스를 원조하고 있으며 1988년 분야별 배분내역은 <표 6>과 같다.

모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미국의 공동모금 분야별 배분내역(1988년)

(단위: 백만달러, %)

	배분액	비율
가족서비스	603.26	21.7
건강서비스	561.56	20.2
청소년 및 사회개발	486.50	17.5
의·식·주	252.98	9.1
공공안전	169.58	6.1
탁아보호	189.04	6.8
지역사회개발	164.02	5.9
수입 및 직업	139.00	5.0
교육	88.96	3.2
기타	125.10	4.5
계	2,780.00	100.0

자료 :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각국의 공동모금』, 1994.

공동모금회의 설립과 활동 등에 관해 규정한 특정 법령은 없으며 해당 주의 법령에 의해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자선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조정총소득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되고 법인의 경우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되며, 기부금 지급액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경비 등도 공제혜택을 줌으로써 세계상 공동모금에의 참가를 유인하고 있다.

4. 일본의 공동모금 역사 및 운영실태

1921년 나가사끼현 사회사업협회에서 관민일체로 모금을 실시한 것에서 시

작되었으며, 1947년 정부주도하에 사회사업공동모금중앙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951년 사회복지법인 중앙공동모금위원회로 개명한 후 1952년 중앙 및 지방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도도부현 단위로 조직된 지역사회공동모금회가 주체가 되고 지역공동모금회는 각기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72조 제2항)으로 존재한다. 모금방법으로는 호별모금, 가두모금, 법인모금, 학교모금, 흥행모금, 연말 이웃돕기모금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호별모금에 의한 모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공동모금제도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업인의 참여도 저조한 상태이다.

〈표 7〉 일본의 모금방법별 모금액(1992년)

(단위: 억엔, %)

	일반모금							연말 이웃 돕기	계
	호별 모금	가두 모금	법인 모금	학교 모금	지역 모금	흥행 모금	기타		
금액	114	4	31	4	8	1	8	87	258
비율	66.3							33.7	100

자료: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각국의 공동모금』, 1994.

모금 실시 전에 공동모금의 목표액, 수혜자의 범위, 배분방법을 미리 도도부현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기부금을 받은 자는 1년간 사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해서는 안되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기부금의 배분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되는 등 공동모금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다.

공동모금회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공동모금회를 비과세조치의 대상단체로 지정하고 있어, 개인의 경우 1만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소득의 25%를 한도로 소득공제되고(소득세법 제78조 제2항 제2호) 10만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소득의 25%를 한도로 주민세가 공제된다(지방세법 제7조 15의 4호 2호 제48조 7의 제2항). 법인의 경우 공동모금회는 국가 및 지방정부로부터 기부금에 관한 「비과세조치의 대상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 전액이 손금인정된다.

일본의 공동모금제도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강제적인 모금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뿐 아니라 도도부현

기부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면 기부금상당액의 과세소득이 감소하여 세액도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기부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된다.

의 공동모금회 배분위원회는 형식적인 업무에 그치고 실제 모금 및 배분은 별개의 조직인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표 8〉 분야별 배분내역(1992년)

(단위: 억엔, %)

	배분액	비율
지역복지서비스사업	108	42
민간복지시설	28	11
민간복지단체	10	4
재해위문금	8	3
연말불우이웃돕기	78	30
홍보비	26	10
계	258	100

자료: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각국의 공동모금』, 1994.

기업인의 참여도 극히 저조한 상태인 일본의 민간복지사업은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발전 대신에 정부예산의 보충·보조수단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의 공동모금 실시현황을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Ⅳ. 각국의 기부금 관련세제

기부금이란 법인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가액으로서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무상적 지출이므로 이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면 기부금상당액의 과세소득이 감소하여 세액도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기부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기부금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표 9〉 한·미·일의 공동모금제 실시현황

	한 국	미 국	일 본
명 칭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미국공동모금회	도도부현 산하 공동모금회
설립근거 및 형식	민간경제·사회단체가 결성한 협의회	특별법령이 없으며 주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활동시작	1992년	1887년	1921년
조직단위	—	메트로폴리탄카운티, 카운티	도도부현
주회 동원	민간주도 모금활동 사회복지기금관리법에 의한 배분	자원봉사자가 모금 및 배분에 참여	시구정촌의 사회복지협의회
주모 금법	민간매스컴 및 구청·동사무소를 통한 성금 모금	기업 및 직장모금 (70~80% 차지)	호별모금 (60~70% 차지)
기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원조	민간자율적 사회복지 제공	정부복지사업의 하청 수준
유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전액 소득공제 법인: 전액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기부단체에 따라 조정 총소득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private fund: 수혜자 지정) 법인: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소득의 25% 한도액-1만엔을 한도로 소득공제. 10만엔초과부분에 대해 연간소득의 25%를 한도로 주민세 공제. 법인: 전액 손금산입

우리나라의 법정기부금은 전액손금인정되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일정한도 손금인정된다.

1. 우리나라의 기부금 종류 및 손금한도액

가. 법정기부금

법인세법상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홀병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게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 사립학교 등에 지출한 기부금 등, 정당에 지출한 정치자금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전액 손금산입된다.

일본에서는 국가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인정되며, 특정 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인정된다.

나.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공익성 기부금 및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으로 손금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text{손금산입한도액} = (\text{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 \text{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times 7\% + \text{자기자본}(50\text{억원을 한도}) \times 2\%$$

2. 일본의 기부금 종류 및 손금한도액

가. 국가에 대한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또는 대장대신이 지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장대신이 지정한 기부금이란 민법 제34조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널리 일반에게 모집하는 것,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서 긴급을 요하는 것에 충당되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

나. 특정 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 향상, 사회복지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것으로서 이화학연구소, 일본적십자사 등 특정 공익증진법인으로 열거되어 있는 법인(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대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도액은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2배로 한다.

다. 일반기부금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특정 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이외의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손금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text{손금산입한도액} = (\text{자본 등의 금액} \times 0.25\% + \text{소득금액} \times 2.5\%) \times 1/2$$

3. 미국의 기부금 종류 및 손금한도액

자선·종교·교육·과학연구·자연보호 등 IRS가 인정한 단체(법인, 신탁,

기금, 단체를 포함)에 현금 내지 물품의 기부는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이라 하여 손금산입된다.

미국은 자선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에 기부한 경우 당기소득의 10%까지 손금인정되며,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표 10〉 한·미·일의 기부금 관련제도 비교

	기부금의 종류	공제한도액	
		법인세	소득세
한국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전액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7% +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자: 소득의 5% 한도에서 소득공제 사업소득자: 법인과 동일
일본	일반기부금	(자본 등의 금액 × 0.25% + 소득금액 × 2.5%) × 1/2	1만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세소득의 25%
	국가에 대한 기부 및 지정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특정 공익증진법에 의한 기부금	일반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의 2배	
미국	자선기부금	과세소득 × 10% (초과한도액은 5년간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자선단체: 과세소득의 50% 민간재단: 과세소득의 30%

자선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공익목적 사용에 한함), 자선단체·종교법인 등 우애조합(자선·종교목적 사용에 한함), 지부 조직에 의한 우애조합, 묘지운영법인, 퇴역군인 조직, 협동병원의 보조조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조직 등이 있다. 손금한도액은 당기소득액의 10%이며 초과한도액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손금산입한도의 폭을 소득의 7%에서 20%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기업의 기부금실태, 기부금창출효과, 세수효과 등을 분석한 후 고려해야 할 것이다.

V. 제시된 정책방안의 평가

1. 공동모금

현행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기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손금산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웃돕기성금이 민간주도의 공동모금 형태로 전환·확대될 경우 현행 세제에 의하면 더 이상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전액 손금산입의 혜택 대신에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적용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공동모금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 민간재단에 대한 기부금과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공동모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우리나라의 공동모금은 그 성격에 있어서 일본과 같은 관주도의 모금이 아니고 미국과 같은 민간주도의 모금이지만, 세제상 혜택에 있어서는 일본과 같이 전액 손금산입을 주장하고 있다. 공동모금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하자는 주장은 현행 법정기부금의 구성(정치자금, 사립학교기부금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설득력이 있으며 기존의 이웃돕기성금이 공동모금의 형태로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기금의 운용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뀌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차별화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공동모금이라는 이유로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단체에 대한 기부금(지정기부금)과 차별하는 논리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의 조정과 관련된 결정은 기업의 기부금지출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손금산입한도의 폭을 소득의 7%에서 소득의 20%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미시자료를 통한 기업의 규모별 기부금 실태(손금산입한도의 소진여부), 손금산입한도 확대에 따른 기부금 창출효과, 세수효과 등을 분석한 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종합평가

제시된 방안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모금이 기업에게는 마치 준조세와 같이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확대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는 기업에게는 그만큼의 커다란 기
 부압력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
 우 준조세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각종 준조세
 를 정리하려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정책방향과 상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KIP~~

민간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금
 마련이라는 기본방향은
 긍정적이나 기업에
 준조세와 같은
 기부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고금리의 원인과 대책

이인표/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지난 3년여간의 호황에
뒤이은 최근의
경기후퇴는 정상적인
경제순환과정의
한 국면으로서 다분히
불가피하고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I. 문제의 제기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은 성장 둔화, 물가 불안, 국제수지 적자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유로서 수많은 요인을 나열할 수 있으나, 크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은 호황에 뒤이은 경기후퇴 및 반도체 등 주력수출상품의 가격폭락과 엔저현상이라는 현상적·단기적 요인, 그리고 흔히 '고비용·저효율'로 표현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이 일시에 작용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경기변동 혹은 경제순환은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 현상으로 믿어지는바, 지난 3년여간의 호황에 뒤이은 최근의 경기후퇴는 정상적인 경제순환과정의 한 국면으로서 다분히 불가피하고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력수출상품의 가격폭락과 엔저현상이라는 요인 역시 상당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비용·저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의 문제는 우리 경제가 지난 30여년간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겨나 계속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근본적인 해결없이 가려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구조적인 문제이며 향후 우리 경제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성과를 살펴보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건비, 물류비용, 금융비용 등 총비용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비용은 인건비, 물류비용, 지가, 각종 정부규제 등과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표 1〉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주요 비용의 추이

(단위: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인 건 비	9.9	11.2	12.8	12.7	12.0	12.9	12.7	12.5	12.6
물 류 비 용	0.9	0.9	1.0	1.0	1.4	1.3	1.4	1.3	1.3
금 융 비 용	4.6	4.6	5.1	5.1	5.7	6.3	5.9	5.6	5.6

주: 인건비는 매출액 원가구성비 중 인건비와 노무비를 합한 값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비용은 인건비, 물류비용, 지가, 각종 정부규제 등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금융비용부담률(금융비용 대 매출액 비율)은 최근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199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주요국 제조업의 금융비용부담률(금융비용/매출액)

(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한 국	5.1	5.7	6.3	5.9	5.6	5.6
일 본	2.1	2.2	2.0	1.8	1.6	-
대 만	2.5	2.4	2.3	2.2	1.7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6.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우선 차입금에 대한 평균이자율, 즉 금리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차입금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하기 때문이다.

또한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4년을 기준으로 금융비용부담률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5.6%로서 일본(1.6%)이나 대만(1.7%)보다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다음의 분석에서 명확해진다. 다음 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융비용부담률은 차입금 평균이자율, 차입금 의존도 및 총자본 회전율로 나눌 수 있으며, 차입금 평균이자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총자본 회전율이 낮을수록 금융비용부담률이 높아진다.

$$\begin{aligned} \text{금융비용부담률} &= \text{금융비용/매출액} \\ &= (\text{금융비용/금융부채}) \times (\text{금융부채/총자본}) \times (\text{총자본/매출액}) \\ &= \text{차입금 평균이자율} \times \text{차입금 의존도} \div \text{총자본 회전율} \end{aligned}$$

<표 3>은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을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차입금 평균이자율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으나, 차입금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비용부담률이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높은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우선 차입금에 대한 평균이자율, 즉 금리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차입금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도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표 3> 제조업 수익성 지표의 국제 비교

(단위: %)

	한 국					일 본				대 만			
	1991	1992	1993	1994	1995	1991	1992	1993	1994	1991	1992	1993	1994
차입금평균이자율(A)	13.0	12.3	11.2	11.4	11.7	6.9	5.7	4.8	4.3	8.9	7.1	7.2	6.2
차입금 의존도(B)	44.6	47.2	46.8	44.5	44.8	34.1	39.6	36.8	36.4	27.2	25.6	26.0	24.2
총자본회전율(회)(C)	1.02	0.92	0.89	0.91	0.94	1.07	1.13	0.98	0.98	1.01	0.79	0.85	0.88
금융비용부담률(A+B÷C)	5.7	6.3	5.9	5.6	5.2	2.2	2.0	1.8	1.6	2.4	2.3	2.2	1.7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뿐 아니라, 차입 의존도의 축소, 그리고 기업의 금융운용의 효율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정책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할 것이다. 본 자료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뿐 아니라, 차입 의존도의 축소, 그리고 기업의 금융운용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II. 우리나라 금리의 추이 및 외국과의 비교

1. 우리나라 금리의 최근 추이

지난해 10월 이래 안정세를 보였던 시중금리는 금년 4월중 큰 폭으로 하락한 후 5월부터 반등하여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에 걸쳐 단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8월 하순 이후 다소 하락하였다.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1991년중 19%대까지 올랐던 시중금리(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는 1992년부터 하락세를 보여 1993~94년중에는 12%대까지 내려갔으나 1994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하여 15%대에 이르렀다가 1995년 하반기 이후 다시 하락, 최근에는 12%대를 나타내고 있다. 실질금리(소비자물가 기준)는 1991년의 9% 수준에서 1993~94년에는 6~7%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1995년에 9%대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6~7%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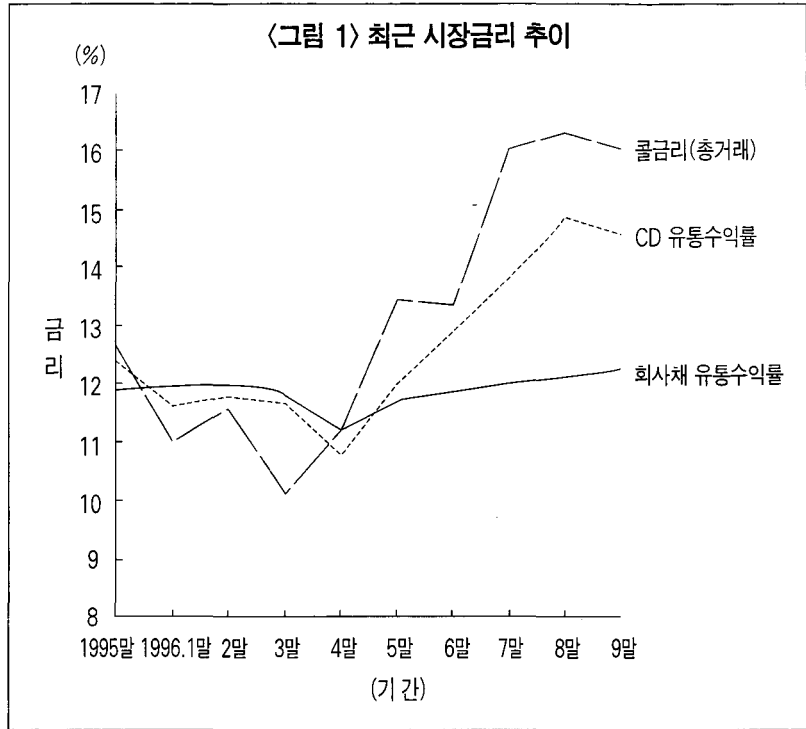
〈표 4〉 최근 시중금리 추이

(단위: 연리, %)

	1995말	1996.1말	2말	3말	4말	5말	6말	7말	8말	9말
회사채유통수익률	11.93	12.04	11.86	11.44	10.44	11.36	11.70	12.10	12.14	12.40
CD 유통수익률	12.30	11.60	11.67	11.35	10.05	12.00	12.65	13.70	15.00	14.40
콜 금 리	12.66	10.46	11.49	9.36	10.57	13.56	13.43	16.08	16.51	15.99

자료: 한국은행, 미출판자료.

시중금리는 금년 4월중 큰 폭으로 하락한 후 5월부터 반등하여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에 걸쳐 단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표 5〉 주요 금리 추이¹⁾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4	2/4
회사채수익률	18.9	6.2	12.6	12.9	13.8	11.8	11.6
실질 금리	9.6	10.0	7.8	6.7	9.3	6.9	6.8
CD유통수익률	15.5	16.4	13.0	13.3	14.1	11.6	11.2
실질 금리	6.2	10.2	8.2	7.1	9.6	6.7	6.4
콜금리	17.0	14.3	12.5	12.6	11.2	10.5	11.2
실질금리	7.7	8.1	7.7	8.4	6.7	5.6	6.4
소비자물가상승률	9.3	6.2	4.8	6.2	4.5	4.9	4.8

- 주: 1. 실질금리 = 명목금리 - 소비자물가상승률.
- 2. 회사채수익률: 3년 만기.
- 3. CD유통수익률: 91일물.
- 4. 콜금리: 1일물 중 비은행간 거래.
- 1) 각 기간별 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통화금융』, 1996. 8.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996. 8.

2. 금리수준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금리수준을 주요 외국과 비교해 보면 1991~95년중 우리나라의 명목금리(회사채수익률 기준)는 14.9%로 미국(6.9%), 일본(4.3%), 독일(7.2%), 영국(8.7%) 및 대만(8.3%)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비용의 실질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라 할 수 있다. 실질금리를 고려하는 경우 외국과의 금리차이가 명목금리의 경우보다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질금리는 1991~95년중 평균 8.7%로서 미국(3.8%), 일본(2.9%), 독일(4.0%), 영국(5.3%), 캐나다(6.4%), 그리고 대만(4.5%)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주요 경쟁상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대만에 비하여 실질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3배, 2배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금리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기업의 자금수요 및 조달형태, 재정금융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요인은 나라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국의 금리를 수평적으로 단순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단순비교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의 금리를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주요 경쟁상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대만에 비하여 실질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3배, 2배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표 6〉 금리 수준의 국제 비교

(단위: 연리,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1~95평균
한 국						
명목금리	18.9	16.2	12.6	12.9	13.8	14.9
실질금리	9.6	10.0	7.8	6.7	9.3	8.7
소비자물가 상승률	9.3	6.2	4.8	6.2	4.5	6.2
미 국						
명목금리	7.9	7.0	5.8	7.1	6.6	6.9
실질금리	3.7	3.9	2.8	4.6	3.8	3.8
소비자물가 상승률	4.2	3.1	3.0	2.5	2.8	3.1

각국의 금리를
수평적으로
단순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의 금리를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표 6〉의 계속

(단위: 연리,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1~95평균
일 본						
명목금리	6.5	4.9	3.7	3.7	2.5	4.3
실질금리	3.2	3.3	2.4	3.0	2.6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3.3	1.6	1.3	0.7	-0.1	1.4
독 일						
명목금리	8.6	8.0	6.3	6.7	6.5	7.2
실질금리	5.1	4.0	2.2	3.7	4.8	4.0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4.0	4.1	3.0	1.7	3.3
영 국						
명목금리	9.9	9.2	7.9	8.1	8.3	8.7
실질금리	4.0	5.5	6.4	5.6	4.9	5.3
소비자물가 상승률	5.9	3.7	1.5	2.5	3.4	3.4
캐 나 다						
명목금리	9.8	8.8	7.9	8.6	8.3	8.7
실질금리	4.2	7.3	6.0	8.4	6.1	6.4
소비자물가 상승률	5.6	1.5	1.9	0.2	2.2	2.3
대 만						
명목금리	8.9	8.2	8.4	7.6	-	8.3 ¹⁾
실질금리	5.3	3.7	5.5	3.5	-	4.5 ¹⁾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4.5	2.9	4.1	-	3.8 ¹⁾

- 주 : 1. 한국의 경우는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 2. 대만의 경우는 5년 만기 공사채 수익률.
- 3. 나머지 나라들은 장기 정부채권 수익률.
- 4. 실질금리 = 명목금리 - 소비자물가상승률.
- 1) 1991~1994 평균임.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6. 4.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996. 8.

Ⅲ.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이유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Fisher equation),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수준이 높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는 각각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크

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경제는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는데 이에 따라 한계자본수익률이 높았고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둘째, 경제성장과정에서 고율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결과로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번째 이유로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외부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산업 등 금융부문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환경이 고비용·저효율의 특성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통화관리 등에 의해 자금수급이 수시로 불안정해지는 등 기타 복합적 요인이 우리 경제의 금리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실질금리는 경제성장률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7~8%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1. 높은 자본의 한계생산성

〈표 7〉에서와 같이 1991~95년중 주요국의 성장률과 실질금리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실질금리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 나라의 실질금리는 경제성장률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7~8%로 주요 선진국(2~4%)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고도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도 수익성 있는 사업기회가 많고 이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7〉 주요국 경제성장률 및 실질금리 비교(1991~95년 평균)

(단위: %)

	한국	대만	미국	독일	일본
경제성장률	7.5	6.6	2.2	1.8 ²⁾	1.3
실질금리	8.7	4.5 ¹⁾	3.8	4.0	2.9

주: 1) 대만의 실질금리는 1991~94년 평균임.

2)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된 수치이며, 1991~94년 평균임.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6. 4.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996. 8.

향후 예상되는 2.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상존

잠재성장률,
 통화증가율,
 통화유통속도 하락률
 등을 감안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크게 하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고 최근 물가상승률이 다
 소 안정되기는 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편으로 각 경제주체의 인
 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인플레이션이 극심했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자금의 대체투자수익과 직접
 연관이 있는 자산인플레이션에 특히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부동
 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 1970년대에는 지가상승률이 연평균
 27.4%에 달하였고 1980년대에도 여전히 높은 15.4%에 달하였다. 또한 향
 후 예상되는 잠재성장률, 통화증가율, 통화유통속도 하락률 등을 감안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크게 하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8〉 주요 지표 추이

(단위: %)

	1970년대	1980년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6
								1/4	2/4
회사채유통수익률	22.8	15.6	18.9	16.2	12.6	14.2	11.7	11.8	11.6
소비자물가상승률	16.5	6.4	9.3	6.2	4.8	6.2	4.5	4.9	4.8
지 가 상 승 률	27.4	15.4	12.8	-1.3	-7.4	-0.6	0.6	0.2	0.2
주 가 상 승 률	7.9	25.3	-12	-10.6	24	32.6	-3.2	-8.4	4.2
임 금 상 승 률	26.3	14.0	17.5	15.2	12.1	12.7	11.2	13.7	10.6 ^{b)}
통 화 증 가 율	30.2	19.2	18.6	18.4	18.6	15.6	15.5	14.6	16.2

주: 1) 1996년 5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동화금융』, 1996. 8.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6. 7.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996. 8.

3. 외부금융에 의존한 기업의 자금조달

우리나라 금리수준이 높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외부차입에 의존
 한 기업의 자금조달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부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상승하여 1994년도에는 41.9%를 차지하고 있으나(〈표 9〉
 참조), 상대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높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비중이 높은

미국, 독일의 70%대에 비해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표 10〉 참조).

〈표 9〉 국내 제조업의 자금조달 구성비

(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내부금융	31.3	33.6	42.1	51.4	41.9
내부유보	7.1	9.8	10.2	14.7	16.1
감가상각비	21.0	19.8	27.5	33.0	21.7
충당금	3.2	4.0	4.4	3.8	4.1
외부금융	68.7	66.4	57.9	48.6	28.1
증자	5.4	3.8	4.9	6.0	3.6
차입	42.0	41.4	41.7	29.8	27.8
기타 ¹⁾	21.3	21.2	11.3	12.8	26.7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높은 이유는 자금의 수요·공급측면뿐 아니라 금융기관, 금융시장 등 금융제도에 있어서의 고비용·저효율구조와 투명성·예측성을 결여한 통화관리 등 기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 1) 매입·채무 등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표 10〉 기업 내부자금 조달 비중의 국제 비교(1986~90년)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대만
기업내부자금 조달비중	31.8	73.2	40.0	70.3	29.0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자금순환』, 1992.

4. 기타 요인

우리나라 금리수준이 높은 이유는 자금의 수요·공급측면뿐 아니라 금융기관, 금융시장 등 금융제도에 있어서의 고비용·저효율구조, 그리고 투명성·예측성을 결여한 통화관리 등 기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금융기관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 금융중개비용이 과다한 것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난다. 은행의 수익성지표를 살펴보면 국내은행은 미국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비해 훨씬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자산이익률(신탁계정 포함)을 보면 국내은행이 1991년 0.59%에 이르던 것이 계속 하락하여 1995년 말에는 0.32%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미국은행(FDIC

통화정책기조의 빈번하고 급격한 변화 등으로 미리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하기 위한 자금가수요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또한 금리 상승요인이 된다.

〈표 11〉 국내은행의 수익성지표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국내은행	국내은행	국내은행	국내은행	미국은행	외인지점	국내은행	미국은행	외인지점
총자산 이익률	0.59	0.56	0.45	0.42	0.92	1.32	0.32	0.98	1.78
자기자본 이익률	6.58	6.69	5.90	6.09	12.80	10.96	4.19	13.75	11.01

주: 은행계정+신탁계정 기준임. 미국은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가맹은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은행경영통계』, 1996.
 Federal Reserve Board, *Federal Reserve Bulletin*.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일반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인식부족, 채권수익률 등에 관한 시장정보 공시체제 및 중개기능 미흡 등으로 수요기반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국공채 발행잔액의 증가가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통해 회사채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한편, 대기업은 직접금융시장 및 해외금융시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사정이 비교적 좋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아 한계기업의 차입금리 상승이 전반적인 시중금리의 추가적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수신실적 위주의 은행경영, 수신경쟁 격화에 따른 고금리상품 개발로 평균 수신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결되어 금리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통화정책기조의 빈번하고 급격한 변화 등으로 미리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하기 위한 자금가수요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또한 금리 상승요인이 된다.

Ⅳ. 금리의 하향안정화 방안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고금리의 원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내지 해결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 경제의 한계자본 수익률이 높은 데 따른 고금리는 현재로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낮추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향후 경제의 성숙과 자본축적의 진행으로 점차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 당분간은 5~7%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금리의 결정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길 경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더라도 금리가 단기간 내에 하향안정화될 수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불식이 필요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물가안정 목표에 부합되는 적정수준의 통화공급과 통화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정책의 일관성, 특히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경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해결과 아울러 기업으로 하여금 과도한 차입의존도를 낮추어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금융부문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통화관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역시 불필요한 자금수요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의 소지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1. 기본방향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는, 우선 시장경제체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자율이 결정되도록 금리자유화를 적극 추진하며, 현행 금융 및 조세제도상의 근본적 원인들을 치유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금리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될 정책 방향인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 국내 경제가 안정 성장기로 진입하여 기업들이 내실화를 추구함에 따라 투자수요가 감소하게 될 때 비로소 실질금리의 하향안정화가 가능하여질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금리 수준 자체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금리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될 정책
방향인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은 물가를 과도하게 상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이 기업들에게 원활히 금융비용 부담 증가에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금리가 다른 기업 경쟁력 결정되도록 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저하를 개선하기 한편 앞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높은 위해서는 금리자유화의 이유는 높은 명목금리에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과도한 차입 의존도에 적극 추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업이 자금조달에 있어 지나친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이자부담의 가중으로 기업의 안전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경기하강시 불황에 신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즉, 탈피를 유도하기 위한 경기대응능력이 약화되어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제도적 방안이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첨단산업의 육성이 긴요한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자본회임기간

의 장기화와 투자위험도의 증대 등에 대처하여 기업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금융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리자유화의 적극 추진과 함께 지나친 차입경영체제에서의 탈피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함에 있어 정책당국은 전반적인 자율화, 규제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창규제, 행정지도 등은 적극 삼가고, 개별 금융기관·기업 등 민간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부문별 대책

가. 자금공급 측면의 대책

각종 저축증진시책을 통하여 가계부문의 자금잉여 확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나친 소비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해외 자본의 대량 유입에 따른 환율절상, 통화증발,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 개방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 자금수요 측면의 대책

불요불급한 가계대출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유도하며, 자금이 제조업 등 생

산적인 부문에 집중되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기업의 중복·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기업이 내부자금조달의 확대와 자구노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외부자금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먼저 기업의 증자를 적극 유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하도록 해야 하며, 기업이 보유부동산 처분 등 자구노력을 통해 소요자금을 조달하고, 보유주식이나 부동산 처분시 처분자금을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은 금융기관·기업 등 민간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 금융기관 경영합리화 측면의 대책

금융자율화, 금융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 대책으로는 정책금융을 축소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자산운용 폭을 확대해야 하고, 금융기관 업무영역 제한의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와 신상품 개발 촉진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제1·2금융권을 막론하고 각 금융기관의 자체 경영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단순금리경쟁을 지양하고 각 기관의 독특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전략적 경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축성 예금(꺼기), 대출커미션 등 불건전 금융관행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라. 금융시장 및 통화정책 측면의 대책

채권시장 수요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은행의 국공채 창구판매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 시장정보공시체제의 확충 등이 촉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공채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은행 대출의 적정화, 재정긴축, 세정합리화 등을 통하여 통안증권 등 국공채 발행규모를 축소시켜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금편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간 신용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자금가수요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고, 통화를 연중으로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월별로는 목표수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금리안정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금리인하를 향한 정책당국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금융기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할인율,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KIP**

지역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1985 → 1994년)

장근호/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중앙 및 지방정부가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의

두 가지 목표를
효율적으로 절충할 수
있는 '지역별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I. 서론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역주민과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과거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다는 국가전체 성장을 위한 효율성 위주의 정책을 선호해 왔다면 이제는 지방정부도 나름대로 성장정책을 펴나가면서 중앙정부에 균등한 자원분배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율적으로 절충할 수 있는 '지역별 산업정책' (Regional Industrial Policy)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수립에 앞서서 우선 필요한 것은 지역경제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자유경쟁에 의하여 지역간의 경제력 차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면 정부의 의도적 개입은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핵심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구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도 경제성장의 요인분석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통계청 자료인 『지역내총생산』에 나타나 있는 1985과 1994년의 시도별 그리고 산업별 생산액 변화를 살펴본다. 자료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현황과 변화를 설명하고 이어서 제조업 등 산업구조와 지역경제발전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지역경제정책의 수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대도시 수준지수의 하락은 인구가 대도시로 계속 유입되는 한편 생산활동은 외곽지역으로 이전되면서 대도시가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지역별 생산액과 산업구조의 변화

1. 시도별 생산액과 인구구성의 변화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이란 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액을 제거한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 자본 등 생산수단의 소유에 따라 산출되는 지역소득(Regional Income)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역내 경제활동의 고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내 총생산의 1985년과 1994년 수치를 1인당 경상가격으로 환산한 것이 <표 1>이다. 이 표에 따르면 1인당 평균생산액이 1985년 당시 192만 원에서 1994년에는 688만원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남이 1985년에 이어 1994년에도 906만 1천원으로 1인당 생산액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낮은 생산액을 기록한 대구에 비하여 약 1.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표 1>의 수준지수는 시도별 1인당 생산액을 전국평균으로 나누어 전국대비 지역별 생산활동의 고저를 표시한 수치이다. 수준지수로 보면 경남(139.5), 경북(110.2), 충북(104.9)과 서울(104) 순으로 높으며 지수가 작은 지역은 대구(76.2), 부산(80), 강원(81.9), 광주(83.1) 등이다. 대구와 부산은 예상 외로 수준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는데 이는 경북과 경남의 수준지수로 비추어 볼 때 대구·부산에서 각각 경북·경남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도의 수준지수가 1985년과 비교하여 1994년에는 증가한 반면 광주를 제외한 대도시의 수준지수는 모두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산활동의 거점이 지방, 특히 대도시 외곽으로 이전되면서 대도시는 주거지역으로서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에서의
생산비중은 감소하거나
인구증가에 비하여
소폭 상승한 반면
대도시 외곽지역의
생산비중은 늘거나
인구감소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표 1〉 1인당 도내총생산 변화(1985 → 1994년)

(단위: 천원, %)

	1985		1994	
	도내총생산	수준지수	도내총생산	수준지수
서울	2,073	108.1	7,160	104.0
부산	1,793	93.5	5,505	80.0
대구	1,499	78.2	5,244	76.2
인천	2,377	123.9	6,963	101.1
광주	-	82.0 ^b	5,718	83.1
대전	-	94.7 ^b	6,003	87.2
경기	2,100	109.5	6,854	99.6
강원	1,679	87.6	5,635	81.9
충북	1,903	99.2	7,220	104.9
충남	1,566	81.7	6,420(6,677)	93.3(97.0)
전북	1,454	75.8	5,812	84.4
전남	1,573	82.0	6,587(7,057)	95.7(102.5)
경북	1,916	99.9	7,589	110.2
경남	2,573	134.2	9,601	139.5
제주	1,497	78.1	6,042	87.7
서울·경기	2,082	108.6	7,037	102.2
부산·경남	2,180	113.7	7,551	109.7
대구·경북	1,747	91.1	6,532	94.9
서울·경기·인천	2,107	109.9	7,028	102.1
서울·경기·경남	2,178	113.6	7,482	108.7
평균	1,918	100.0	6,883	100.0

주: () 안의 수치는 광주직할시와 대전직할시를 각각 제외한 수치임.

1) 1989년 수치임.

자료: 통계청, 「1992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1994: 통계청, 「1994년 지역내총생산」, 1996.

즉, 지역별 인구구성비와 생산구성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표 2〉를 살펴 보면 서울·부산·대구·인천 4개 대도시의 인구점유율이 동 기간에 1.5%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 포인트 감소하였다. 도

시별로는 인천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생산비율은 소폭 상승하였고 부산은 인구점유율이 0.2% 포인트 감소한 반면 생산비율은 1.4% 포인트나 하락하였다. 한편 이들 대도시 외곽지역인 경기·경북·경남의 경우, 경기도는 인구와 생산비율이 각각 3.3%, 3.1% 포인트 증가하였고, 경남은 인구점유율이 감소하였으나 생산비율은 증가하였으며, 경북은 인구가 1.2% 포인트 줄었으나 생산은 0.6% 포인트만 감소하였다. 이에 비하여 기타지역의 경우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이 4.6%, 생산비중은 1.5% 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는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중 하나인 경기도로 유입되었는데 대도시에서의 생산비중은 감소하거나 인구증가에 비하여 소폭 상승한 반면 대도시 외곽지역의 생산비중은 늘거나 인구감소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동일한 현상이 대도시권역인 충남(대전)·전남(광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충남은 인구점유율이 1989년 4.6%에서 1994년 4.1%로 0.5% 포인트 줄었지만 생산액점유율은 오히려 3.5%에서 4.1%로 0.6% 포인트 늘었고 전남은 같은 기간에 인구가 5.9%에서 5.1%로 감소한 대신 생산비중은 5.3%에서 5.2%로 0.1% 포인트만 줄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대도시 내 공장의 중과세정책과 지가상승 등으로 생산활동이 탈대도시화하는 반면 교육·문화 등 주거환경은 대도시가 아직 유리하여 인구가 대도시 또는 그 권역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도시가 점차 소비도시화되고 대도시권역은 생산기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추후 지역별 산업구조에서 인구 대비 도소매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그 수준지수가 대폭 하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역인구가 각각 37%, 39%씩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경북과 전남·북은 이와는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1인당 생산액은 증가하였고 충북은 큰 인구의 감소없이 수준지수가 증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대전을 포함하는 충남과 경남지역의 인구비중은 줄었으나 생산비중은 오히려 늘었고 인천은 인구비율이 1.3% 포인트 증가한 반면 생산액점유율은 0.5% 포인트만 늘었다. 이밖에 강원도의 경우 인구가 약 25%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생산액이 하락하여 취약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1인당 생산액으로 볼 때 수준지수의 표준편차가 1985년과 1994년 사이에 18.5에서 16.7로 감소하여 인구를 감안한 생산액의 지역별 격차는 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1994년 지역총생산 발표 이후 일부에서 경제력

대도시 내 공장의 중과세정책과 지가상승 등으로 생산활동이 탈대도시화하는 반면 교육·문화 등 주거환경은 대도시가 아직 유리하여 인구가 대도시 또는 그 권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성장산업이나 외부효과가 큰 산업이 입지하는 지역은 고용이나 이윤·소득증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타지역에 비하여 빠르게 발전하게 된다.

의 지역편중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경인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 현재 62.4%이며 총생산 비율은 64.9%로 경제활동과 인구가 양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1985년 당시에 비하여 인구와 생산비중이 각각 5.9%, 2.1%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표 2〉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및 인구구성비(1985 → 1994년)

(단위: %, 천명, 10억원)

	1985		1994	
	인구비율	생산비율	인구비율	생산비율
서울	23.8	25.8	24.1	25.1
부산	8.7	8.2	8.5	6.8
대구	5.0	3.9	5.1	3.9
인천	3.5	4.3	4.8	4.8
광주	2.6 ¹⁾	2.1 ¹⁾	2.7	2.3
대전	2.4 ¹⁾	2.3 ¹⁾	2.6	2.3
경기	11.8	12.9	16.4	16.3
강원	4.3	3.7	3.3	2.7
충북	3.4	3.4	3.1	3.2
충남	7.4	6.1	6.8(4.2)	6.4(4.1)
전북	5.4	4.1	4.3	3.6
전남	9.3	7.6	7.7(5.1)	7.4(5.2)
경북	7.4	7.4	6.2	6.8
경남	8.6	11.6	8.5	11.9
제주	1.2	0.9	1.2	1.0
서울·경기·인천	39.1	43.0	45.3	46.2
서울·경기·인천·부산·경남	56.5	62.8	62.4	64.9
전국 합계	40,806	78,266	44,453	305,974

주: () 안의 수치는 광주직할시와 대전직할시를 각각 제외한 수치임.

1) 1989년 수치임.

자료: 통계청, 「1992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1994: 통계청, 「1994년 지역내총생산」, 1996.

그러나 양 지역에서의 인구와 생산액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산·경남 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서울을 포함한 경인지역으로의 편중현상이다. 즉, 이 지역의 인구비중이 동 기간에 39.1%에서 45.3%로 6.2% 포인트 만큼 대폭 증가한 반면 생산비중은 43%에서 46.2%로 3.2% 포인트 늘었다. 이 수치로 볼 때 정부의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이 사실상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인구는 주로 전남(-1.6%), 경북(-1.2%), 전북(-1.1%), 강원(-1%)에서 경기(4.6%), 인천(1.3%)으로 이동하였고 지역별 생산점유율도 인구비율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생산활동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1985년에서 1994년까지 지역별 인구 및 생산액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인구는 주로 대도시와 경기도로 이주하고 있는 반면 생산활동은 대도시 권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둘째,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생산활동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물류비용, 지가 등 생산비용이 낮거나 시장이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고 인구는 주거환경이 좋거나 소득이 높은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특히 성장산업이나 외부효과가 큰 산업이 입지하는 지역은 고용이나 이윤·소득증진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기업과 인구가 집중하여 여타 지역에 비하여 빠르게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개발과 산업구조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물론 지역산업구조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2. 시도별 산업구조의 변화(1985 → 1994년)

〈표 3〉은 1985년과 1994년의 지역별 산업구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체로 볼 때 농업·광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은 각각 6.5%, 3.7% 포인트씩 줄고 제조업의 비중도 0.3% 포인트 감소하는 대신 전기·건설·운수·통신업과 금융·보험, 부동산 등 사업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각각 3.9%, 6% 포인트씩 증가하였다.

각 지역 내 총생산에서 전기·건설·운수 등 사회기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정부서비스를 포함하는 기타산업도 다른 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균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개 대도시에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중요성이 감소한 대신 금융·보험 등 사업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업서비스산업의 국내 총생산액 대비 대도시 생산액의 비율은 동 산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1985년 67.5%에서

대도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감소하여 서비스산업 위주로 바뀌고 있는 반면 제주도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1994년 64.6%로 줄었다. 서울이 총생산의 약 52%를 점유하다가 1994년에는 49%로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도시에서의 도소매업이 국내 총도소매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 기간에 62.9%에서 62.8%로 별 변화가 없었다.

〈표 3〉 시도별 생산구조의 변화(1985 → 1994년)

(단위: %)

	농어업·광업	제조업	전기·수도·건설·운수·통신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사업서비스업	기타산업
서울	0.5 (0.10)	11.5 (17.2)	20.5(20.1)	20.6(26.2)	37.7(27.2)	9.2 (8.5)
부산	2.6 (4.2)	22.9(34.3)	26.1(20.2)	17.2(19.5)	21.0(13.8)	10.1 (7.9)
대구	0.05 (1.5)	23.1 (32.8)	24.2(17.6)	17.8(23.1)	24.2(13.6)	10.3(11.4)
인천	1.3 (2.3)	47.3 (49.5)	23.3(22.2)	7.0(10.5)	14.4 (9.0)	6.7 (6.6)
광주	3.0 (3.9)	26.8 (32.5)	24.4(20.1)	13.8(17.0)	19.5(13.6)	12.5(12.9)
대전	1.1 (2.0)	23.2 (30.2)	23.6(19.5)	17.4(19.4)	18.9(16.2)	15.8(12.7)
경기	5.4 (12.4)	45.7 (45.1)	21.1(16.9)	6.3(10.2)	13.3 (7.9)	8.3 (7.7)
강원	15.7 (35.8)	16.5 (13.7)	27.8(20.3)	11.4(11.4)	11.9 (6.8)	16.7(12.1)
충북	13.0 (29.0)	37.6 (32.7)	20.5(14.2)	6.2 (7.3)	11.6 (7.3)	11.0 (9.5)
충남	14.3 (27.1)	23.9(19.0)	25.7(17.7)	10.1(12.9)	13.4(11.5)	12.7(11.7)
전북	19.0 (32.6)	24.0 (22.7)	20.6(12.0)	10.1(12.0)	11.8 (7.8)	14.4(12.9)
전남	17.4 (27.1)	27.1 (26.5)	24.0(15.4)	8.0(11.5)	12.5 (8.2)	11.0(11.3)
경북	15.9 (30.0)	37.0 (33.6)	21.1(14.9)	5.8 (6.5)	10.5 (5.8)	9.6 (9.2)
경남	7.7 (12.4)	53.4 (48.9)	19.1(18.6)	5.8 (8.1)	7.9 (5.7)	6.1 (6.3)
제주	29.9 (40.1)	3.8 (4.5)	23.4(18.7)	13.0(13.7)	16.4(10.7)	13.6(12.3)
전국	7.3 (13.8)	30.1 (30.4)	22.0(18.1)	11.7(15.4)	19.4(13.4)	9.5 (9.0)

주: () 안의 수치는 1985년 기준이며 대전과 광주는 각각 1989년 수치임.
 자료: 통계청, 「1994년 지역내총생산」, 1996.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서울·부산·대구에서의 도소매업 비중은 17.2% 이상인데 이들 대도시 권역인 인천·경기·경북·경남에서의 도소매업 비중은 최고 7.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내 도소매 총생산에서 대도시권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7%에서 20.8%로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인구점유율은 31.3%에서 35.9%로 4.6%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이들 대도시의 도소매업 비중 62.8%(1994년)와 비교하여 보면 대도시 외곽 인구의 소비활동 중 많은 부분이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대도시에서의 도소매업 활동 중 그 대부분이 도매업이라면¹⁾ 이러한 추측이 비약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도시권역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데 이들 지역의 도소매업 비중은 큰 변화가 없어 소비활동이 대도시에 점차 편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의 경우 대도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감소하여 대도시가 서비스산업 위주의 경제로 바뀌고 있는 반면 제주도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제조업 비중이 4.5% 포인트 늘어나 경남 지역 총생산액의 53.4%를 제조업에서 창출하고 있고, 경기는 그 비율이 0.6% 증가하여 총생산액의 45.7%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부산·대구·인천 4개 대도시에서의 제조업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35.0%에서 1995년 25.4%로 9.6%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도시 생산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과 일치하는 현상으로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중과세정책과 지가상승으로 제조업 기반이 점차 지방으로 이전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조업이 주로 대도시권역인 경기·경남으로 재배치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이 같은 기간에 제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7%에서 45.9%로 8.2%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서울·인천·부산을 포함한 이들 지역이 우리나라 제조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68.4%에서 1994년 68.2%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충남·북에서의 동 비중이 늘기는 하였지만 총생산액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에 9.1%로 약 1.6% 포인트 상승하였고 전남·북은 9.7%로 변화가 없었다.

지역별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비중과 그 변화를 자세히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이 아직은 제조업이라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제조업제품은 그 특성상 중간재나 부분품 등 주변산업으로의 생산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의 발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중대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산업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시 각 산업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1993년 기준 전기·가스·건설업이 1.94, 서비스업이 1.57인데 제조업은

제조업은 주변산업으로의 생산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의 발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중대하다.

1) 1993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도매업의 총생산액은 11조 7천억원이고 소매업은 8조원이다.

제조업은 국내시장 규모에 따른 양적 제약없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제조업의 중간재투입률이 0.71로 전기·가스·건설업(0.54), 서비스업(0.34)보다 높아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낮은 편이고 또 각 지역을 하나의 고립된 생산단위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생산유발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물류·정보교환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이 관련산업을 동일지역에 유치하거나 또는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는 클 것이다. 이러한 생산교류기능이나 연구개발 등 제조업간의 또는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을 야기하는 집적이익(Agglomeration Economy)이 두번째 이유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수출품은 주로 공업제품이므로 제조업은 국내시장 규모에 따른 양적 제약과 상관없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지역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생산유발효과가 큰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고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의 발전이 곧 국가경제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1. 지역경제 성장률과 산업구조(경상가격)

지역경제와 제조업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표 4>를 통하여 지역별 경제성장률(경상가격 기준)과 산업구조의 상관관계를 대략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 총생산액과 1인당 생산액을 보면 인천과 경기도는 총생산액이 전국평균을 웃도는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1인당 생산액증가율은 평균을 밑돌고 있다. 반면 전남·북과 경북의 경우 총생산액 성장률이 전국평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성장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은 인구감소로 인한 것이다.

<표 4>에서 다섯번째 열은 1985년과 1994년에 각 산업이 국내총생산에 기여한 비율과 지역별로 해당산업이 지역총생산에 이바지한 비율과의 상관관계 수치이다. 높은 성장률을 성취한 인천·경기·경남과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구조는 0.91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충남과 제주와 같은 예외

도 있다. <표 4>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대도시와 그 외곽지역의 상관관계를 보면 경기와 서울(-0.04), 인천과 서울(0.13), 경북과 대구(0.65), 경남과 부산(0.24)은 산업구조가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도시는 소비중심의 사회로, 그리고 그 외곽지역은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실제로 이들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하나의 생산단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도시는 소비중심의 사회로, 그리고 그 외곽지역은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들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연결되어 있다.

〈표 4〉 생산액, 인구 증감률과 산업구조의 상관관계(1985 → 1994년)

(단위: %)

	총생산액 성장률	인구증감률	1인당 성장률	상관관계
서울	16.0	1.1	14.8	0.24
부산	14.1	0.7	13.3	0.82
대구	16.1	1.0	14.9	0.79
인천	17.7	4.5	12.7	0.94
경기	19.4	4.7	14.0	0.94
강원	12.1	-2.0	14.4	0.16
충북	15.7	-0.2	16.0	0.83
충남	17.0	0.0	17.0	0.48
전북	14.8	-1.6	16.6	0.45
전남	16.1	-1.0	17.2	0.53
경북	15.2	-1.1	16.5	0.76
경남	16.7	0.8	15.8	0.91
제주	17.4	0.6	16.8	-0.39
전국	16.4	1.0	15.3	1.00

주: 상관관계는 1985년과 1994년 각 지역과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의 상관관계 수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1992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1994: 통계청, 「1994년 지역내총생산」, 1996.

2. 지역경제 성장률과 산업구조(불변가격)

지역별 경제성장률과 제조업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 물가변동을 제거하고 지역내 총생산의 불변가격표를 이용하였다. 이는 우선 물가의

산업별로 보면 상대적 변화가 상기의 상관관계를 흐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경제의 양 금융·보험 및 적 변동이 우리의 주된 관심지표이므로 불변가격이 경상가격보다 더 적절하 사업서비스산업이 가장 다. 이와 같이 가격변동분을 제외하고 지역별, 산업별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률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을 구한 것이 <표 5>이다.

전기·건설·통신업, 제조업, 도소매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5> 산업별 성장률과 성장률오차(1985 → 1994년)

	총생산액	농어업·광업	제조업	전기·수도·건설·운수·통신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사업서비스업	기타 산업	성장률 오차
표준오차	2.1	2.0	4.5	2.0	0.1	2.0	1.6	2.0
서울	9.3	-0.1	5.2	9.5	8.7	13.6	3.2	-1.8
부산	6.8	1.2	1.0	11.0	8.5	13.7	4.0	-3.4
대구	9.3	-3.4	6.2	12.3	8.8	17.0	2.3	-0.9
인천	10.4	-0.7	9.5	12.1	8.5	17.6	5.6	0.0
경기	13.0	1.6	14.8	14.8	8.9	19.7	8.2	3.6
강원	4.7	-3.2	4.8	9.4	7.8	13.7	3.2	-2.9
충북	7.7	-0.7	8.9	12.9	8.8	15.5	4.5	-0.5
충남	9.4	1.6	12.4	15.4	9.9	12.8	4.9	1.2
전북	6.0	1.0	4.2	14.3	8.3	13.7	3.4	-1.6
전남	10.2	2.4	16.8	15.4	7.7	15.1	2.8	2.4
경북	8.4	0.2	10.8	13.7	9.1	16.9	3.0	0.5
경남	10.3	1.4	12.3	12.4	8.2	15.4	3.3	1.1
제주	8.3	3.6	8.3	13.0	11.4	15.6	5.3	1.5
전국	9.5	1.0	10.2	12.3	8.7	14.7	4.1	-0.0

주: 성장률오차는 각 산업이 해당산업 전국평균 생산액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팽창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예상성장률을 실제성장률(첫번째월)에서 감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1994년 지역내총생산」, 1996.

산업별로 보면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산업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전기·건설·통신업, 제조업, 도소매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역별 성장률이

높은 곳은 경기, 인천, 경남, 전남 순이며 강원과 전북의 성장률은 매우 낮다. 제조업의 경우 지역별 성장률의 표준오차가 0.045로 지역에 따라 제조업 발전의 기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도시 외곽지역인 경기, 경북, 경남과 함께 전남과 충남의 제조업생산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북, 강원은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제조업성장률도 낮다. 한편 도소매업의 성장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져 표준오차가 0.001에 불과한데 특히 제주도는 관광산업 발전에 힘입어 도소매업의 성장률이 11.4%에 달한다.

〈표 5〉 마지막 열의 성장률오차는 지역별로 각 산업이 해당산업의 총생산액 증가율과 동일한 비율로 성장했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산업별 예상생산액을 합한 후 성장률을 구하여 실제성장률(첫번째열)에서 감한 수치이다²⁾. 따라서 성장률오차는 1985년 지역별 생산구조와 산업별 평균성장률이 설명할 수 없는 지역경제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경기도의 성장률오차가 3.6인데 이는 경기도 경제가 나라 전체 경제와 똑같은 비율로 성장하였을 때보다 3.6% 더 높게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

이 표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제조업성장률과 성장률오차와의 관계이다. 제조업의 전국평균 성장률은 10.2%인데 이보다 높은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성장률오차가 양의 값을 갖고, 낮은 지역은 음의 값을 갖는다. 만약 제조업의 집적효과나 동일지역 내에서의 생산과급효과가 크다면 제조업이 몰려있는 지역은 예상보다 빠른 성장을 할 것이며 이는 성장률오차와 제조업성장률이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추정한 것이 〈표 6〉이다.

〈표 6〉에 따르면 실제 총생산액 증가율과 성장률오차와의 상관계수는 0.791로 성장률이 높은 지역은 예상보다도 빠르게 성장한 반면 성장률이 낮은 지역은 기대한 것보다 느리게 개발되고 있다. 산업별 상관관계로 보면 금융·보험, 사회서비스산업이 기대한 것보다 성장률오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반면 제조업은 0.924의 높은 상관계수를 유지해 제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시도가 예상외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반대로 제조업의 발전속도가 느린 시도는 기대한 것보다 저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성장률오차와 전기·수도 등 사회기반산업도 0.759라는 낮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비록 제조업이 사회기반산업보다는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 두 산업의 상대적 영향력을 다른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집적효과나 동일지역 내에서의 생산과급효과가 크다면 제조업이 몰려 있는 지역은 예상보다 빠른 성장을 할 것이다.

2) 즉, 성장률오차 x_i^{1994}
 $= y_i^{1994} - \alpha y_i^{1985} / y_i^{1985}$

y_i^{1994} = 1994년 시도 i의
 총생산액 증가율.

α = j산업의 총생산액
 증가율

y_i^{1985} = 1985년 시도 i에서
 의 j산업 생산액.

y_i^{1985} = 1985년 시도 i의
 총생산액

산업별 상관관계로 보면 금융·보험, 사회서비스산업보다 제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시도가 예상 외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성장률오차와 실제성장률, 산업구성비 변화율과의 상관관계

	실제성장률	산업구성비 변화율
총생산	0.791	-
농어업·광업	0.557	-0.329
제조업	0.924	0.771
전기·수도·건설·운수·통신업	0.759	-0.149
도소매업	0.307	-0.558
금융보험·사회서비스업	0.573	-0.585
기타산업	0.514	-0.397

주: 산업별 구성비는 1985~1994년까지의 시도별 산업생산율(지역총생산 대비)의 증감률을 의미함.

〈표 6〉의 세번째 열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지역의 산업별 생산액을 해당지역 총생산액으로 나눈 뒤 1985년과 1994년 사이의 변화율을 나타낸 생산구성비 변화율과 성장률오차와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상관계수가 0.771로 성장률오차와의 관계가 생산증가율에 비하여 약화되었지만 기타산업에 비하여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1985년과 1994년 사이에 제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예상 외로 이 지역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사회기반산업 등 여타산업은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제조업과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조업과 1985년 당시 지역별 산업구조와 산업별 평균성장률이 설명할 수 없는 지역경제 성장률을 분석하였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제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은 예상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조업성장률 대신 지역 내 제조업 비중의 변화율을 변수로 사용하여도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관측결과는 본 논고에서 다루지 않은 제3의 요인-지가상승률-과 같은 변수에 의하여 유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산업의 이전 또는 성장이 지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가를 포함하는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제조업의 중요성이 상존하리라 생각되는데 이를 검증하는 것이 추후 연구과제라 하겠다.

IV. 결론

본고는 1985년과 1994년 사이의 지역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계청의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구는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반면 생산활동은 대도시 외곽에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주변지역 인구가 생산은 주거지역에서 하면서 소비는 도시에 의존하고 있어 대도시 권역이 하나의 생산단위로 묶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경인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은 심각하여 조사기간 동안 국내 총인구에서 경인지역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6.2% 포인트 증가하였고 생산비중은 3.2% 포인트 늘었다. 이 수치로 볼 때 정부의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은 사실상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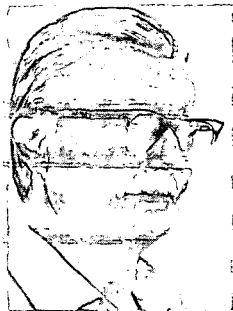
한편 제조업의 성장률이 높은 지역은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제조업의 역할이 미약한 지역은 성장이 느리다. 미국의 경우 금융과 보험업이 활발한 지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는 아직 발전단계상 제조업이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조업이 중간재수요나 외부효과 등 입지지역 내에서의 생산유발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가능성은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성장을 주로 잠재시장이 큰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제조업의 수출비중이 워낙 커서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제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특성에 알맞는 산업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세분화하여 제조업과 지역경제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KDI

우리나라는 아직 발전단계상 제조업이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제조업이 생산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노벨경제학상

금년도 노벨경제학상은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제임스 멀리스 교수와 컬럼비아대학교의 윌리엄 비크리 교수가 공동수상했다. 『재정포럼』 11월호에서는 1996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학문세계를 조명해 보고, 노벨경제학상의 선정과정과 역대 수상자들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기획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 제임스 멀리스의 인간적 면모와 학문적 업적... 나성린 / 한림대학교 교수
- 윌리엄 비크리와 그의 학문세계...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노벨경제학상을 말한다..... 최 광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제임스 멀리스



윌리엄 비크리

1996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멀리스의 인간적 면모와 학문적 업적

나성린 / 한림대학교 교수

멀리스의 경제학 교육방법은 매우 엄격하다. 우선 그 자신이 훌륭한 수학자이지만 경제적 의미없이 수학에만 의존하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필자가 새로운 결과를 가져갈 때마다 경제적 의미를 물어서 필자가 머뭇거리면 항상 "intuition first, mathematics is only needed later to prove that intuition" 하고 조용히 나무라곤 했다.

I. 멀리스의 노벨상 수상 이유

스웨덴 한림원은 제임스 멀리스(James Mirrlees) 교수와 윌리엄 비크리(William Vickrey) 교수가 「비대칭적 정보하에서의 인센티브의 경제이론」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1996년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결정권자들(decision makers)이 상이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최적계약과 기구(institutions)들의 고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인센티브의 문제가 개입되는 경제적 예는 무수히 많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재산에 대한 피보험자의 책임성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는 보험시장, 잠재적 구매자의 지불액에 대해 경매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경매, 개별납세자의 생산성에 대해 정부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소득세제 고안, 비용과 경쟁상황에 대해 주주와 전문경영인 사이의 비대칭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주-대리인' 문제 등과 같은 것들이다.

비크리와 멀리스 두 사람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주요소가 되는 이슈들에 대한 그들의 분석적 연구를 통해 걸보기엔 전혀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는 이러한 분야들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다. 비크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관적인 해답을 제공한 데 반해 멀리스는 보다 정교한 수

불완전한 정보하에서의 인센티브문제에 대한 해는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적 정보를 진실되게 나타내게끔 유도하는 비교적 제한된 범위의 소위 「배분메커니즘」에 속한다. 이 원칙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문제에 대한 최적 계약과 다른 해들을 고안하는 것이 훨씬 쉽게 된다.

학적 모형화를 통해 구체적 해답을 제공했다는 것이 두 사람의 차이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940년대에는 비크리가 누진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노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누진소득세의 고안을 인센티브문제(개별 납세자들이 근로노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세율구조를 고려하기에)와 비대칭적 정보(정부가 개인의 생산성에 대해 모르기에)의 문제로 재구성하였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직관적인 해법을 제공하긴 했지만 수학적 테크닉의 한계로 그 구체적인 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약 25년 뒤 멀리스는 이 문제에 대해 정교한 수학적 해를 제공했고, 이것은 비대칭적 정보와 인센티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

멀리스는 1971년 「최적소득세이론의 탐구」라는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대폭 간단하게 만들어서 해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조건(즉, 「단일교차」)을 발견해냈다. 그의 분석은 또한 「현시원칙(revelation principle)」이라는 일반적 원칙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불완전한 정보하에서의 인센티브문제에 대한 해는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적 정보를 진실되게 나타내게끔 유도하는 비교적 제한된 범위의 소위 「배분메커니즘」에 속한다. 이 원칙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문제에 대한 최적 계약과 다른 해들을 고안하는 것이 훨씬 쉽게 된다. 멀리스의 이러한 패러다임은 수많은 다른 경제이론의 해결

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멀리스는 최적소득세 이외에 MIT의 피터 다이아몬드 교수와 함께 「최적물품세」에 관한 연구(1971)도 하였는데 이 연구는 최적물품세에 대한 매우 철저하고 거의 완전한 연구로서 그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의 하나이다. 이 두 개의 「최적조세」 연구는 거시정책 중심의 기존의 재정학을 미시경제적 방법론을 이용하는 새로운 공공경제학으로 태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멀리스는 최적물품세 연구에서 도출한 「생산효율성」 결과를 곧 이안 리틀과의 공저인 개발도상 경제에서의 「비용 - 편익원칙」의 분석에 적용하기도 하였는데, 이 원칙은 그 이후 경제학에서 다양하게 원용되는 이론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비용 - 편익분석」은 경제발전론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II. 멀리스 그 인간적 측면

제임스 멀리스는 1936년에 스코틀랜드의 미니가프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7년에 에딘버러대학에서 수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63년에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가르치다 1969년에 33살의 젊은 나이로 옥스퍼드대학의 정교수가 되어 옥스포드의 경제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 부인의 갑작스러

운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1995년에 케임브리지의 경제학 교수로 옮기기 전까지 옥스퍼드에 재직했다.

멀리스는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것은 그가 제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독특한 원칙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된다. 그는 매년 3명의 제자만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그가 제자들을 책임감 있게 잘 지도하기 위해 세운 원칙으로서 일단 그의 제자가 된 학생들은 철저한 지도를 받을 수 있기에 무척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운이

좋게 그의 제자가 된 필자도 4년 동안 매주 월요일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는 바람에 일요일도 없이 지내야 했던 어려웠던 시절들이 지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또한 그는 제자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3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이 대부분 원래 성적이 우수하고 수학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기에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필자를 제외하곤 거의 예외없이 지켜졌다.

멀리스의 경제학 교육방법은 매우 엄격하다. 우선 그 자신이 훌륭한 수학자이지만 경제적 의미없이 수학에만 의존하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필자가 새로운 결과를 가져갈 때마다 경제적 의미를 물어서 필자가 머뭇거리면 항상 "intuition first, mathematics is only needed later to prove that intuition" 하고 조용히 나무라곤 했다. 항상 직관적으로 먼저 생각하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필자가 논문에서 very small, 또는 quite large 같은 말을 사용하면 무척 나무랐다. scientist로서 경제학자는 very나 quite와 같은 애매한 용어를 사용해선 아니되고 정확하게 얼마만큼 작고 큰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멀리스 교수는 그의 연구와 관련해 또 독특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논문이나 저서가 그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론이 아니면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그는 mimeo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일단 발표된 논문이나 저서는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것들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론경제학자가 아니면 멀리스의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론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멀리스의 출판된 논문이나 mimeo를 읽지 않을 수 없고, 또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멀리스 교수의 조언을 받고 그에 대해 acknowledgement를 그들의 논문이나 저서에 서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멀리스 교수는 그의 유명세와는 달리 매우 수줍은 성격의 소유자이다. 세미나에서 그의 논평은 매우 유용하고 결정적이기 마련인데 그는 항상 발표자가 미안해 할 만큼 조심스럽고도 수줍어하며 의견을 제시하곤 하는 게 매우 인상적이다.

그의 부인이 그의 노벨상 수상소식을 듣지 못하고 별세한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멀리스 교수는 그의 연구와 관련해 또 독특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논문이나 저서가 그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론이 아니면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그는 mimeo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일단 발표된 논문이나 저서는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것들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Ⅲ. 최적소득세 이론: 비대칭적 정보하에서의 인센티브 이론의 원조

멀리스의 비대칭적 정보하에서의 인센티브 이론에 대한 기여는 그의 1971년 논문인 「최적소득세 이론의 탐구」에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다음에서 그의 최적소득세 이론을 자세히 분석해 봄으로써 경제이론의 발전에 있어 그의 업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멀리스의 최적소득세 모형에서 정부의 목표는 모든 개인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모든 개인들은 여가와 소비에 대해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으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상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개개인은 자신의 생산성을 알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x 는 개인의 세전소득(또는 생산) 그리고 y 는 세후소득(또는 소비)이라고 표시하자. 개인간의 생산성 차이는 일정한 구간에 대해 분포되어 있는 지수 t 에 의해 나타내진다. 상대적으로 높은 t 를 가진 개인은 더 적은 노력과 더 적은 근로시간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주어진 양 x 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성이 t 이고 주당 노동시간을 e 라 하면 $x = et$ 이다. c 만큼 소비하고 e 만큼 일하는 개인의 효용은 $u(c, e)$ 이고 u 는 c 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e 에 대해서는 감소한다고 가정하자. 일주간의 노동시간을 1로 정규화하면 $z=1-e$ 는 개인의 여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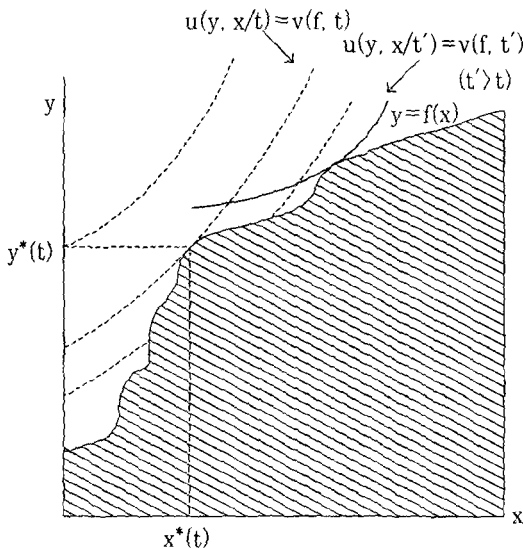
나타낸다.

정부의 목표는 개인들의 소비의 합이 총생산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제약조건하에 모든 개인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개 개인의 유형(type) t 를 관찰할 수 있다면, 정부는 개인들로 하여금 이 최적화문제의 해에 따라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요구하면 될 것이다. 즉 여가가 정상재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지닌 개인은 더 낮은 효용을 즐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한편으론(개인들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의 한계효용이 모든 개인에 대해 같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론(자원제약을 쉽게 충족시키기 위해) 더 생산적인 개인들이 더 일을 많이 하게 할 것이다. 최적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간의 균형은 더 생산적인 개인으로부터 덜 생산적인 개인으로 효용의 이전을 의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지수가 커질수록 더 낮은 효용을 즐겨야 한다는 사실은 위의 최적화문제에 내포된 「인센티브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만약에 정부가 개 개인의 유형 t 를 관찰할 수 없고 위의 해를 집행하려 한다면, 모든 개인은 그들의 생산성을 실제보다 더 낮게 보고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도출된 「최선의 해」는 개 개인의 생산성이 그들의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일 때는 달성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대신에 멀리스는 개 개인의 생산성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사적 정보」이고 재분배는 모든 개인들에게 「공통(common)」인 세

율구조(tax schedule)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차선의 해」를 찾으려고 시도했다. 세율구조는 세후소득 y 를 세전소득 x 의 함수 f 로 결정한다. 그러한 조세함수 f 가 주어지면 유형 t 인 개인은 효용 $u(f(x), x/t)$ 를 극대화하도록 그의 세전소득(생산) x 를 선택할 것이다. 개인 t 의 경우, $x^*(t)$ 와 $y^*(t)$ 를 자신의 생산과 소비의 최적 선택이라고 하자. 그리고 $v(t)$ 를 그 결과로 나타난 (최고) 효용이라고 하자.

개인의 효용극대화문제는 아래 그림에서 보여진다. 수평축은 개인의 생산 $x=et$ 를 그리고 수직축은 소비 y 를 나타낸다. 점선은 효용함수 u 의 수준(x 와 y 사이의 무차별곡선)을 나타내고 불규칙한 실선은 조세함수 f 를 나타낸다.



노동시간의 상한은 1로 정규화되어서 t 의 생산의 상한 또한 t 가 된다. 조세함수 아래의 빗금친 부분은 개인의 선택집합(choice set)이다. 최적효용수준 $v(t)$ 는 무차별곡선이 조세함수(선택집합의 경계)에 접하는 점에서 달성된다.

따라서 세율구조 f 는 정부 선택의 대상, 즉 정책 수단이다. 누진도(progressivity)를 포함한 세율구조의 특징은 정부의 최적화문제로부터 도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특징은 처음부터 가정될 수는 없다. 이것은 경제모형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볼록성(convexity)가정이 조세함수의 경우에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조세함수의 볼록성이 가정되지 않으면 개인들의 최적화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최적 해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모든 개인의 최적화문제를 제약조건으로 가지는 정부의 최적화문제가 다루기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멀리스가 고안해 낸 타결책은 효용함수에 경험적으로 합당한 제한(즉, 「단일교차」 조건)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 제약하에서 정부의 최적화문제는 모든 개인의 최적화문제들을 결합한 제약조건이 효용도함수 $dv(t)/dt$ 에 대한 미분방정식에 의해 대체될 수 있도록 재구성될 수 있게 된다. 이 미분방정식은 개인 유형 t 가 한계적으로 변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개인의 효용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멀리스는 바로 이 최적화문제가 개인 유형 t 에 대한 (응용수학에서 잘 알려진) dynamic control problem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t 를 시간으로, 효용수준 $v(t)$ 를

스웨덴 한림원이 발표한 대로 그의 수상이유가 「비대칭적 정보하에서의 인센티브의 경제이론」에 대한 중요한 기여라면 그의 1971년 연구인 최적소득세이론이 그러한 기여를 구체화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조세함수 자체가 선택변수가 되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복잡한 최적화문제를 「단일교차」조건을 발견함으로써 단순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시간 t 에 있어서의 state로, 미분방정식을 state 변수 $v(t)$ 에 대한 운동의 법칙(law of motion)으로, 그리고 개인 t 의 생산 $x(t)$ 를 통제변수로 해석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이 dynamic control problem을 폰트리아진의 maximum principle을 이용하여 풀었다.

이 최적화문제에 대한 해인 개인 유형 t 에 대한 $\hat{x}(t)$ 와 $\hat{y}(t)$ 는, 일련의 방정식 $y = \hat{y}(t)$ 와 $x = \hat{x}(t)$ 로부터 지수 t 를 제거함으로써, 조세함수 $y = f(x)$ 로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리하여 비로소 비대칭적 정보하에서의 정부의 최적정책수단 f 가 구해진 것이다.

멀리스는 $v(t)$ 에 대한 미분방정식이 각 개인 유형 t 가 정부입장에서 최적인 생산 $\hat{x}(t)$ 를 선택하는 것을(즉, $x^*(t) = \hat{x}(t)$) 보증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대폭적 단순화와 최적화문제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 가장 주요한 가정은 소위 「단일교차(single-crossing)」 조건이다. 효용함수 u 에 대한 이 조건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x, y) 평면에서 개인 t 와 개인 t' 의 두 무차별곡선이 교차해야 한다면 더 생산적인 개인의 무차별곡선이 더 완만한 경사를 가지기를 요구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달리 말하면 두 무차별곡선이 한번 이상 교차할 수 없다는 것이다(즉, 단일교차). (증가하는) 조세함수 f 와 관련하여 이것은 더 생산적인 개인이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최적임을 의미한다. 이 「단일교차」 조건은 비대칭적 정보하에서의 인센티브의 다양한

미시경제학적, 게임이론적 모형에서 필수적 조건이 되어 왔다. 멀리스는 바로 이 조건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한 최초의 경제학자인 것이다.

멀리스에 의해 재구성된 최적화문제는 마치 정부가 모든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생산성지수 t 를 보고하도록 요구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생산 목표 $\hat{x}(t)$ 와 소비목표 $\hat{y}(t)$ 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온다. 각각의 생산성지수 t 에 대해 미리 정해진 이러한 개별적 목표들은 정부차원에선 개인들에 의해 보고된 사적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공약이 되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이러한 공약이 주어질 때 모든 개인은 그 자신의 목표를 자발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멀리스의 분석은 따라서 매우 의미심장하고 일반적인 통찰력의 출발이 된 것이다. 모든 개인들에게 그들의 사적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경제적 배분메커니즘은 직접적이라고 불리운다. 만약에 진실된 보고가 모든 개인들에 대해 최적이면 그 메커니즘은 유인양립적(incentive compatible)이라고 불리운다. 위의 멀리스의 논의에 의하면 「단일교차」조건하에서 조세함수 f 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배분은 「직접적」이고 「유인양립적」 배분 메커니즘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소위 「현시원칙(revelation principle)」은 모든 바람직한 배분에 대해서 그것을 실시하는 직접적이고 유인양립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분석가들로 하여금 최적 메커니즘의 탐색을 비교적 작은 범위의 직접적이고 유인양립

적인 메커니즘에 국한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그것은 분석을 상당히 단순화시키게 된다.

있는데 멀리스 교수의 업적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을 것이다. **니카**

IV. 결어

지금까지 제임스 멀리스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된 이유를 그의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스웨덴 한림원이 발표한 대로 그의 수상이유가 「비대칭적 정보하에서의 인센티브의 경제이론」에 대한 중요한 기여라면 그의 1971년 연구인 최적소득세이론이 그러한 기여를 구체화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조세함수 자체가 선택변수가 되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복잡한 최적화문제를 「단일교차」조건을 발견함으로써 단순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 단순화된 최적화문제가 dynamic control problem의 기법에 의해 풀려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비대칭정보와 인센티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고, 이것은 다른 무수한 경제이론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은 항상 어떤 경제학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 경제학자에게 주어지고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996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윌리엄 비크리와 그의 학문세계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재정학 워크숍에 참석하여 비크리 교수가 보여준 날카로운 통찰력과 캠퍼스 생활에서의 기인과 같은 행동은 생생하다. 또한 매주 열리는 경제학과 개설 재정학, 응용미시, 계량경제학 세미나에 노령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발표중에는 조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발표 후 토론시간에는 발표논문의 핵심을 꿰뚫고 취약점을 지적하여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곤 하였다.

I. 서론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컬럼비아대의 윌리엄 비크리(William S. Vickrey) 교수와 케임브리지대의 제임스 멀리스(James Mirrless) 교수가 공동 수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스웨덴 한림원은 두 학자가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인센티브에 관한 경제이론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을 인정하여 수상하게 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졸업한 컬럼비아대학교의 은사였던 비크리 교수의 전반적인 학문세계를 노벨상 수상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구애받지 않고 소개하고자 한다. 노벨경제학상이 공동수여되는 경우에 수상자의 연구업적간 공통분모를 찾는 일보다는 한 사람의 경제학 대가가 관심을 갖고 연구한 분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가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II. 학문세계

먼저 윌리엄 비크리 교수의 학문세계는 1992년 프랭크 세이드만賞 수여식에서 제임스 토빈 교수의 비크리 교수에 대한 묘사에서 한 마디로 잘 나타나 있다.

“빌 비크리는 이론경제학자들을 위한 이론가라고 할 수도 있으나, 보다 정확하게는 응용경제학

자들을 위한 이론가인 동시에 이론경제학자들을 위한 응용경제학자이며, 항상 경제학의 원리와 분석도구를 제반 사회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정책결정, 입법, 행정, 그리고 제도입안에 관심을 가진 학자였다.”

비크리 교수의 업적을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분배기능과 관련해서는 조세이론, 자원 배분기능과 관련해서는 공공이용시설과 교통수단의 가격결정이론, 경제안정화기능과 관련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순수이론분야인 사회선택이론과 전략적 행위분야에도 업적을 남겨 현대 재정학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분야들을 두루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¹⁾.

그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도 논리적 기초에서부터 부문별 문제 분석, 그리고 구체적 정책대안의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방법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순수이론분야에서는 일찍이 1945년 *QJE* 논문²⁾에서 현대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기초 위에서 후생함수 발전에 기념비적 역할을 하고, 나중에 롤즈(Rawls)의 사회정의론(Theory of Justice)에서 중심을 이루는

개념의 하나인 '원초적 상상(original position)' 개념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후에 하사니 교수(J. Harsanyi)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처지 및 지위, 기호 등에 관해 철저히 모르는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뒤에 감추어진 가상적 상황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비크리 교수는 역대의 어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보다도 조세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고, 특히 실천지향적 연구를 많이 한 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비크리 교수 자신의 학문성향이 비대칭정보하에서의 경제주체의 인센티브 추구행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조세분야가 자연스럽게 그의 연구분야에 속하게 된다. 둘째, 연구조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인연을 맺게된 같은 컬럼비아대 Carl Shoup 교수와 함께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조세개혁 문제를 직접 다루었고, 조세관련 연구용역을 많이 수행한 경험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소득세의 소득평균화 방법, 건물·토지세, 상속과세 등 다양한 조세분야에서 이론적 기초뿐만 아니라 시행 가능

1) 윌리엄 비크리 교수의 주요 학문적 업적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한 논문모음집으로 Richard Arnott, Kenneth Arrow, Anthony Atkinson and Jacques Dr ze, *Public Economics: Selected Papers by William Vickr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가 있다. 이는 그의 제자였던 197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애로우 교수를 포함한 4인의 경제학자가, 1994년 그의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편집한 논문집이다.

2) William. S. Vickrey, "Utility, Strategy, and Social Decision Rul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4, 1960.

비크리 교수의 업적을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분배기능과 관련하여는 조세이론, 자원배분기능과 관련하여는 공공이용시설과 교통수단의 가격결정이론, 경제안정화기능과 관련하여는 거시경제정책을 들 수 있다. 비크리 교수는 역대의 어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보다도 조세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고, 특히 실천지향적 연구를 많이한 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한 절차적 상세성까지도 다루면서, 자신의 주장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외부활동을 하는 등 실천적 연구자세를 보였다.

III. 경력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지난 10월 8일에 발표된 윌리엄 비크리는 컬럼비아대학의 맥비커 정치경제 석좌교수(McVickar Professor Emeritus of Political Economy at Columbia)로 재직중이었으며, 수상발표 3일 후인 10월 11일(금) 향년 82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1914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빅토리아에서 출생하였고 1935년 예일대에서 수학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이후, 1937년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및 1947년 동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46년 이후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왔다. 즉, 1935년 컬럼비아에 경제학 공부를 위해 대학원에 온 이후 안식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컬럼비아대학을 학문적 고향으로 삼아 60년 이상을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였다.

1946년에 모교의 교수가 된 뒤 첫 10년간은 주로 조세관련 연구와 자문활동에 보냈으며, 그후에는 조세분야 외에도 공공이용시설, 교통, 도시문제 등으로 관심분야를 넓혀 공공기관이나 비전문가들을 위한 자문 및 집필활동을 하였다. Carl Shoup의 연구조교로 있던 1939년에는 자본이득

을 과세하는 방법의 하나로 누적평균화방법을 제안하였으며 1949년에는 Shoup를 도와 전후 일본의 조세체계 정비를 위한 기초작업을 하였다. 이외에도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그리고 라이베리아 등지에서 자문활동을 하였으며 일년 동안은 유엔의 재정문제자문관(advisor on fiscal matters for the United Nations)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잠비아, 아이보리 코스트, 리비아, 수리남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공공이용시설에 관한 연구는 1939년의 전력산업에 관한 연구가 출발점이 되었으며 그뒤 1951년에 뉴욕의 지하철요금(subway fares), 그리고 1959년에 워싱턴의 교통체증(traffic congestion)에 관한 연구로 계속 이어졌다. 또한 인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지에서는 도시계획(urban planning)과 교통(transportation)에 관한 자문활동도 하였는데, 전기·전화·교통·도로·항공 분야에서 효율적인 가격체계(efficient pricing)를 수립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를 하였다.

비크리는 공공이용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안해 낸 제도를 현실에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조세학회(National Tax Association), NBER, Public Utility Conferences, Transportation Symposia에서 강연을 하거나 뉴욕 타임즈에 기고물 하기도 하였는데 자신이 제안한 제도의 현실 도입이 지연되는 것에 종종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2년에는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의 명예교수(McVickar Professor Emeritus of Political Economy at Columbia)에 임명되어 강의 및 제자양성의 일선에서 물러난 후, 경제학도가 개설한 재정학, 도시경제학, 계량경제학 워크숍에 매 주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활동을 보였다.

1992년 미국경제학회(AEA) 회장을 역임하면서, 그의 학문적 관심 대상은 거시경제 정책 분야로 옮겨와 미국의 정부예산회계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에는 미국정부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1993년 1월 6일 미국경제학회 회장 취임 연설문인 "Today's Task for Economists"에는 이러한 그의 최근 관심사가 잘 나타나 있다³⁾.

IV. 학문적 주요업적

1. 경매 자원배분

비크리 교수의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Counterspeculation, Auctions, and Competitive Sealed Tenders"(1961)라는 논문을 통해 여러 가

지 경매방식을 분석한 후 소위 「이등가격경매(the second-price auction)」 또는 「비크리경매」로 보다 잘 알려진 경매방법을 제안하였다⁴⁾. 그의 연구는 불완전경쟁시장 내에서는 완전경쟁하의 자원배분과 유사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러너(Abba P. Lerner)의 제안에 감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비크리의 분석은 경매이론 분야에서만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정보하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유인(incentives)을 제공하는 자원배분메커니즘을 설계하는 데도 통찰력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주체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진정한 지불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원리를 개발하는 연구로 발전하였다.

비크리경매란 통합된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입찰자에게 낙찰되는데, 낙찰가액은 최고입찰가액이 아닌 두번째로 높은 입찰가액으로 결정하는 경매방법이다. 비밀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개별 구매자들은 경매대상물건에 대해 그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매각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상쇄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매각자들이 이러한 경매방법을 택한다면 개별 구매자들은 경매물건에 대한 그들의 진정한 지불의사를 밝힐 유인을 갖게 되어, 구매자 및 매각자 양

3) "Today's Task for Economists," in *American Economic Review*, Presidential Address to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6 January, 1993.

4) "Counterspeculation, Auctions, and Competitive Sealed Tenders," *Journal of Finance*, 1961.

비크리경매란 봉합된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입찰자에게 낙찰 되는데, 낙찰가액은 최고입찰가액이 아닌 두번째로 높은 입찰가액으로 결정하는 경매방법이다. 결국 경매참여자 입장에서 최상의 전략은 과소 및 과대입찰의 두려움없이 입찰자의 진정한 가치대로 입찰가격을 적어넣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경매참여자가 낮게 입찰하고도 낙찰된다 하더라도 그는 진정한 가치대로 입찰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반대로 너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그에게 낙찰되지 않는다면 그는 낙찰가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얻을 기회를 잃는 것이다. 결국 경매참여자 입장에서 최상의 전략은 과소 및 과대입찰의 두려움없이 입찰자의 진정한 가치대로 입찰가격을 적어넣는 것이다.

즉, 경매에 참가하는 구매자들이 매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 및 권리의 가치에 대해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불완전정보 상태하에서, 사회적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 개인의 진정한 지불의사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모색한 것이다. 후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비크리의 날카로운 통찰력 덕분에 미연방재무성 발행 채권매각 및 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경매시 매각수입 극대화를 위한 방법으로 비크리경매법의 채용을 적극 권고하게 되었다. 경매 분야에 미친 그의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어서,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평의회(CEA) 의장인 스티글러(Joseph E. Stigler) 교수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보장하면서 경매수입을 극대화하는 경매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등의 질문은 비크리 교수 앞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술회하고 있다⁵⁾.

2. 최적소득세(Optimal Income Tax System)

이론

조세분야에 관한 연구 중 비크리 교수의 독창성이 가장 돋보이는 논문으로 "Measuring Marginal Utility by Reactions to Risk" (1945)를 들 수 있는데, 소득세체계를 설계할 때 효율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이는 후배 경제학자들이 그후 최적소득세문제라는 형태로 구체화시킨 분야이며, 인센티브문제와 비대칭정보라는 양 요소를 접목시켜 모델을 구성하였다.

소득세구조에 관해서는 1897년의 엣지워스(Francis Y. Edgeworth)의 논문이 고전인데, 이는 공리주의적 후생함수의 시각에서 모든 개인효용의 합으로 정의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분배적 조세체계를 어떻게 설계하여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엣지워스는 소비의 한계효용계감 가정하에 누진소득세율체계를 지지하여, 모든 개인의 소비에 대한 효용함수가 같다면 후생극화의 필요조건으로서 모든 개인들의 한계효용이 일치하도록 개인의 총소득 차이를 누진소득세의 부과로 제거하여 순소득을 동일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비크리 교수는 동 논문에서 그러한 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개인이 자신의

5) "Economists Win Nobel for Role of Data in Deals," *The Wall Street Journal*, 1996. 10. 9.

근로노력을 선택할 때 세율체계를 감안한다는 인센티브문제와 개인의 생산성에 대해 과세당국인 정부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비대칭정보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모델을 재구성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 논문은 엡지워스와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적 접근방법을 택하여, 정부는 모든 개인의 효용 합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모든 개인은 생산노력 (productive effort) e 와 소비 y 공간 내에서 동일한 선호체계를 갖지만,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이함을 강조하고, t 라는 생산능력을 가진 한 개인이 x 라는 양만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노력 e 는 함수 $e = w(x, t)$ 로 나타낼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정부의 목적은 총조세수입이 사전에 결정된 일정 수준에 달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모든 개인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분배정책은, 개인의 생산 x 에 기초하여 개인의 소비 y 를 결정하는 조세함수 $y=f(x)$ 를 통해 실행된다. 이때 납부세액은 $x-y$ 이므로 조세함수 f 가 주어졌을 때 각 개인 t 는 그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생산 x 를 선택한다. $x^*(t)$ 를 개인 t 의 최적생산 노력선택이라고 하고 $v(t)$ 를 그 결과 나타나는 개인효용수준이라고 하면, 정부의 최적화 문제는 총조세수입 $\int (x^*(t) - f(x^*(t))) dt$ 가 일정 수준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모든 개인효용의 합

$\int v(t) dt$ 가 극대화되도록 함수 f 를 선택하는 것이고, 비크리 교수는 이러한 calculus of variation 문제의 오일러방정식을 도출하여 최적조세함수의 필요조건을 제시하였으나, 명시적인 해(explicit solution)를 구할 수 없고 식 자체도 다소 복잡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그는 '식을 전개할 경우 너무 복잡해져서,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모델에서도 해를 용이하게 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결국 너무 비관적이고 성급한 결론이었음이 후에 밝혀졌다.

비크리 교수의 1945년 연구와는 독립적으로, 25년 후에 최적소득세문제를 새로이 그리고 보다 정교하게 모형화하여 해(解)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한 사람은 이번에 노벨상을 공동수상한 제임스 멀리스 교수(James Mirrless)였다. 멀리스 교수는 비대칭정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경제이슈를 다루었는데, 문제를 단순화하고 해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인 조건인 단일교우조건(單一交叉條件: single crossing condition)을 발견하였다. 또한 현시원칙(示顯原則: revelation principle)이라고 불리는 일반원칙을 발견하였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인센티브문제에 대한 해는 비교적 제한된 경우에만 구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개인이 자신에 관한 비밀정보를 자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솔직히 나타낼 수 있는 배분메커니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세분야에 관한 연구 중 비크리 교수의 독창성이 가장 돋보이는 논문으로 "Measuring Marginal Utility by Reactions to Risk"(1945)를 들 수 있는데, 소득세체계를 설계할 때 효율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이는 후배 경제학자들이 그후 최적소득세문제는 형태로 구체화시킨 분야이며, 인센티브문제와 비대칭정보라는 양 요소를 접목시켜 모델을 재구성하였다.

3. 자본이득세 소득평준화

비크리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인 "An Agenda for Progressive Taxation"(1947)과 "Averaging of Income for Tax Purposes"(1939)에 포함되어 있는 누적평균화(cumulative averaging)이론은, 누진적 소득과세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안정적 소득흐름을 과세표준으로서 개발하려는 동기에서 시작하였다⁶⁾.

동결효과란 세제가 자산의 보유기간에 영향을 주는 현상 중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증대시키는 쪽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특히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경우 이러한 동결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본이득의 발생시점과 거래로 실현되어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시점 간의 시차로 인해 납세지연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결효과의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비크리가 제안한 것이 누적평균화(cumulative averaging)의 방법이다. 이 주장의 기본 아이디어는, 소득현실시점 중립적인 소득세과세를 위해 자본이득을 발생기준으로 과세하되 그 납부는 이자지불 조건부로 실현시까지 연기시켜 줌으로써 납세자가 조세목적을 위해 거래시점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이득 발생분에 대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여 부과하되 그

세액에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납부시기를 실현시기까지 연기해 주면 이러한 세금은 자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중립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문제점은 자본이득이 언제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유동성(liquidity) 문제는 해결했지만 자산평가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4. 건물세 지가변동효과

비크리 교수는 지가나 토지임대료를 기초로 부과되는 토지세는 토지가격에 자본환원(capitalization)되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반면, 건물세는 임차자에게 전가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고, 건물세가 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리모형으로 제시하였다⁷⁾.

평균용적률 h 인 건물의 연간 관리 및 금융비용을 $C=(1+x)f(h)=(1+x)bhr$ 라고 보고, 이 중 b 와 $a(>1)$ 는 상수이며 x 는 실효건물세율이라고 하였을 때, 건물세가 단일중심 원형도시팽창모형(monocentric city model) 내에서 도시팽창, 토지임대료 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물세는 도시팽창(urban sprawl)을 증가시키며 도시외곽 경계에서 토지임대료를 증가시키고 도심에서의 토지임대료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6) "Averaging of Income for Income Tax Purpos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39.

"Cumulative Averaging after Thirty Years," in *Modern Fiscal Issues: Essays in Honor of Carl S. Shoup*, 1972.

7) "The Impact on Land Values of Taxing Buildings," Proceedings of the 62nd National Tax Conference, 1969.

있다. 토지임대료는 총임대료 중 일정비율을 차지하여, 건축비와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토지가치와 건물가액간에 어떤 정상적인 관계가 상당히 일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감정평가업계의 관행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결국 건물세 부담의 변경이 총토지임대료에 미치는 효과는 도시공간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에 의존하는데, 탄력적인 수요는 건물세율의 인하로 총토지임대료를 증가시킨다. 본 모형에서는 토지임대료, 건축비(건물가액), 교통비는 총공간점유비의 일정 부분씩을 차지하여 토지임대료는 사실상 공간에 대한 총지출에 비례하여 변화하게 된다.

본 모형이 시사하는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탄력적이면 건물세를 경감 또는 폐지하여 상승한 토지가치 또는 토지임대료로부터 세수입을 보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문제는 도시주변의 토지가격은 하락하므로 일률적인 토지세의 인상은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산가치가 하락한 재산소유자에 대한 보상조치와 함께 토지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형태를 취하는 토지세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시사점은 건물세로부터 토지세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도심의 토지가치는 상승하고 도시외곽의 토지가치는 하락한다는 점이다.

5. 종합상속세(An Integrated Successions Tax) 안

비크리 교수는 미국의 증여세·상속세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최종수혜자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이전방식을 조금만 바꾸어도 세부담의 큰 변화를 일으켜 불공평성과 임의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고, 상속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사회전체적 견지에서 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⁸⁾. 예를 들어, 상속세액이 재산을 이전하는 빈도에 상관없이 결정되므로 피상속인은 가급적 재산을 세대생략하여 상속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 세대인(contemporaries)이면 낮은 누진세율체계를, 세대간 차이가 많으면 높은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하는 상속세제를 제안하였다. <표 1>에서 간단한 예를 통해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890년에 태어난 피상속인은 1915년에 태어난 상속인에게 100만달러를 유산으로 남기며, 상속인은 과거 증여 등을 통해 총 950만달러를 이미 받았음을 가정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간 연령차는 25세이므로 <표 1>에서의 II - a 세율체계표를 먼저 적용받아 총 1,050만달러에 대한 세금

8) "William Vickrey An Integrated Successions Tax," *Taxes*, 1945.

비크리 교수는 미국의 증여세·상속세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최종수혜자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이전방식을 조금만 바꾸어도 세부담의 큰 변화를 일으켜 불공평성과 임의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고, 상속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사회전체적 견지에서 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3,715,940달러(=3,496,440달러 + 500,000달러 × 0.439) 중 과거 취득본인 950만달러에 대한 세금 3,277,940달러(=3,059,440달러 + 500,000달러 × 0.437)를 제한 438,000달러만을 첫15년간 연령차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납부한다. 추가적인 연령격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II-b 세율체계표에 따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구할 경우, 연

간순추가세액은 1,050만달러에 대한 144,404달러(=136,704달러 + 500,000달러 × 0.0154)에서 950만달러에 대한 129,604달러(=122,504달러 + 500,000달러 × 0.0142)를 제한 14,800달러이다. 따라서 총 세부담은 586,000달러(=438,000달러 + 14,800달러 × (25-15))가 된다.

〈표 1〉 상속세 누진세율체계 안 : 상속·피상속인 간 연령차별 차등화

(단위: 달러, %)

	세율체계 I 상속인이 연상이거나 15년 미만 연하				세율체계 II 상속인이 15~29년 연하				세율체계 III 상속인이 30~44년 연하
	세율체계 I-a 연상의 상속인		세율체계 I-b 연하·연수별 추가세		세율체계 II-a 15년 연하 상속인 세부담		세율체계 II-b 연령차 증가에 따른 추가세 부담		
	과표하한 세액	세율	과표하한 세액	세율	과표하한 세액	세율	과표하한 세액	세율	
5천 이하	0	1.0	0	0.07	0	2.05	0	0.13	
5천~1만	50	2.0	3.50	0.15	102.50	4.25	6.50	0.25	
1만~2만	150	3.0	11	0.21	315	6.15	19	0.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만~1천만	629,350	9.5	162,006	2.28	3,059,440	43.7	122,504	1.42	
1천만~2천만	724,350	9.7	184,806	2.28	3,496,440	43.9	136,704	1.54	
2천만~5천만	1,694,350	9.9	412,806	2.30	7,886,440	44.4	290,704	1.64	
5천만 초과	4,664,350	10.0	1,102,806	2.36	21,206,440	45.4	782,704	1.64	

자료: William Vickrey, "An Integrated Successions Tax," *Taxes*, 23, 1945, pp. 122~127.

이 된 그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KDI

V. 결어

비크리 교수는 1982년 명예교수로 재직하면서부터 그 전까지 담당하던 대학원 재정학 강의와 도시경제학 강의를 후배교수에게 넘기게 되어, 필자의 유학시기에 직접 강의를 들을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매주 월요일 오후의 재정학 워크숍에 참석하여 비크리 교수가 보여준 날카로운 통찰력과 캠퍼스 생활에서의 기인과 같은 행동은 생생하게 필자의 뇌리에 남는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논문지도교수가 아니면서도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제안서를 발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도시경제학과 응용미시분야에 해당하는 필자의 학위논문계획에 대해 그의 과거 연구경험에 기초한 질문과 건설적 제안을 해 주었던 기억이 새롭다. 또한 매주 열리는 경제학과 개설 재정학, 응용미시, 계량경제학 세미나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발표 중에는 조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발표 후 토론시간에는 발표논문의 핵심을 꿰뚫고 취약점을 지적하여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곤 하였다.

금년 초 본인이 수행하던 「한국의 토지세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컬럼비아대 연구실을 찾았을 때, 자신이 고안한 소득평균화방법이 한국의 자본이득과세인 양도소득세에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던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만 이제는 고인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말한다

최 광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학교에서, 정부에서, 연구소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평생을 바쳐 경제학을
생각하고, 쓰고, 다듬고 있지만,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출판된 지 60년,
그가 서거한 지 5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경제학의 또다른 획을 긋는
경제학자는 불행히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1. 노벨경제학상의 탄생배경

해마다 10월에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노벨상은 노벨(Alfred B. Nobel, 1833~1896)이 남긴 유언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노벨은 상이 수여되는 직전연도까지 자연과학 분야에서 발견, 발명 그리고 개량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혜택을 가져온(능력이 탁월한 개인이 아닌) 구체적 업적(specific achievement)에 대해 노벨상을 수여하도록 유언하고 있다.

화학자였고 355종류의 특허를 소유했던 발명가인 동시에 다국적 기업가였던 노벨이 남긴 짧은 유언에 따라 노벨상은 물리, 화학, 의학, 문학, 세계평화의 5개 부문에 걸쳐 1901년에 제정되었는데, 원래의 구상에는 경제학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1969년에 제정되어 1996년까지 28년 동안에 40명의 학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은 노벨경제학상의 탄생 배경, 수상자의 선정과정, 역대수상자들의 연구업적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노벨경제학상의 제정에 대한 발상은 스웨덴 중앙은행(Sveriges Riskbank)의 아스브링크(Asbrink) 총재에 의해 시작되었다.

스웨덴 중앙은행의 창립 3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노벨경제학상의 제정을 착안한 아스브

링크 총재는 그의 생각을 스톡홀름대학의 교수로서 당시 스웨덴 중앙은행의 경제자문역이었던 린드 벡(A. Lindbeck) 교수와 일차적으로 상의를 하고, 이어서 스톡홀름 경제대학(Stockholm School of Economics)의 룬드버그(E. Lundberg) 교수, 그리고 스톡홀름대학의 뮌르달(G. Myrdal) 교수와 접촉을 한 결과 강력한 지지를 얻어 노벨경제학상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지와 결심을 바탕으로 스웨덴 중앙은행은 노벨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매년

12월 10일 노벨상 수여식의 의식을 관장하는 노벨재단(Nobel Foundation)과 노벨물리학상과 노벨화학상을 관장하는 스웨덴 왕립학술원(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 이하 학술원이라 함)과 노벨경제학상 제정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학술원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노벨상을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둘째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에 노벨상을 주는 것은 화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경(硬)과학(hard science)' 과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술원의 망설임은 당시 학술원의 회원이었던 뮌르달 교수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 해소되어 학술원은 새로이 노벨경제학상의 제정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막후 협의과정을 거쳐 노벨재단, 학술원 그리고 스웨덴 중앙은행이 1968년 5월에 경제학상의 수여와 관련된 제반 조건에 합의하고

1969년 1월 스웨덴 정부가 이를 성문화함으로써 노벨 경제학상이 탄생하게 되었다.

노벨상 수상자의 선정에 관장하는 기관은 분야별로 다르다. 경제학상, 물리학상, 화학상은 학술원이, 의학상은 카롤린스카연구소(Karolinska Institute in Stockholm)가, 문학상은 스웨덴 한림원(Swedish Academy)이, 그리고 평화상은 노르웨이 국회(Norwegian Parliament)가 관장한다.

Ⅱ. 수상자 선정의 과정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가 결정되는 과정은 다른 부문의 경우와 같다. 우선 매년 10월 전세계 대학의 경제학과 중 75개 학과 소속의 교수들에게 추천의뢰서가 송부된다. 선정되는 75개 경제학과는 매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경영학, 경제사와 같은 인접과학의 학과도 포함된다. 교수 외에도 유명한 연구소에서 일하는 경제학자에게도 추천의뢰서가 송부된다. 기관은 자격이 없고 개인만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선정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매년 150~200건의 추천서가 접수되고 추천대상자는 75~1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정위원회는 추천서에 나타난 제안들에 구속을 받지 않지만 추천서에 나타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다. 어떤 학자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추천되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누구에 의해서 추

매년 150~200건의 추천서가 접수되고 추천대상자는 75~1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학자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추천되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누구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선정위원회가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추천을 하는 경우, 이는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천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선정위원회가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추천을 하는 경우, 이는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추천서가 접수된 다음 선정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가장 특출한 후보자들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한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는 스웨덴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대부분 스웨덴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다. 각 후보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보고서가 작성되며, 매년 20~30명의 후보가 집중적으로 검토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는 수차례 걸친 회의를 통하여 최종수상자를 결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최종결정자에 대해 그의 업적과, 위원회가 그를 선정하게 되는 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보고서를 앞의 전문가 보고서와 함께 스웨덴 왕립학술원에 제출한다. 선정위원회에서의 최종결정은 지금까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정위원회의 보고서는 먼저 학술원의 사회과학분과위(Social Science Class)에 제출되고, 이어 10월 중순경 학술원의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추천된 후보의 수상여부는 학술원 전체회의에서 비밀투표로 결정되는데, 학술원 회원 260명 중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이 투표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스톡홀름 소재 학술원

본부에서 수상자 결정에 관한 공식적 성명이 대중매체에 발표된다. 학술원에서의 토의든 선정위원회에서의 논의에서든 노벨상 수상자의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이 비밀에 부쳐지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발표 전에는 수상자를 알 수가 없다.

Ⅲ.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노벨경제학상은 1969년에 시작되어 1996년까지 28회에 걸쳐 40명에게 수여되었는데, 연도별 수상자의 인적 사항과 전공분야는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수상자 40명을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영국이 5명, 스웨덴, 노르웨이가 각각 2명씩이고,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소련에서 각각 1명씩 배출되었다. 학교별로는 시카고대학이 단연 선두로 모두 8명이고,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각각 3명, 예일대학, 케임브리지대학, 오슬로대학, 캘리포니아대학, 프린스턴대학, 옥스퍼드대학이 각각 2명씩이며, 그 외 네덜란드대학, 스톡홀름대학, 스톡홀름경제대학, 프라이부르크대학, 카네기-멜런대학, 펜실베이니아대학, 조지메이슨대학, 컬럼비아대학, 파리10대학, 스탠포드대학, 뉴욕시립대학, 워싱턴대학, 본대학, 소련과학원 등이 각각 1명씩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들 40명 경제학자들

의 연구업적은 실로 다양하며, 이들의 정치적 이념 또한 매우 다양하다.

〈표 1〉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수 상 자	소속대학	국 가	공 현 업 적
1969	R. 프리시 J. 틴베르헨	오슬로대학 네덜란드대학	노르웨이 네덜란드	경제환경설명 계량경제학에 공헌
1970	P.A. 사뮤엘슨	메사추세츠공과대학	미국	정태 및 동태적 경제이론의 개발
1971	S. 쿠즈네츠	하버드대학	미국	경제성장에 대한 경험주의적 해석
1972	J.R. Hicks K.J. 애로우	옥스퍼드대학 하버드대학	영국 미국	일반경제의 균형이론 및 복지이론 연구
1973	W.W. 레온티에프	하버드대학	미국	투입산출표의 개발과 그 응용
1974	G. 뤼르달 F.A. 하이에크	스톡홀름대학 프라이부르크대학	스웨덴 오스트리아	화폐와 경제변동에 관한 선구적 연구
1975	L. V. 칸트로비치 T. 쿠프망	과학원 예일대학	소련 미국	자원의 적정배분에 관한 이론 전개
1976	M. 프리드먼	시카고대학	미국	소비분석 · 통화이론 개발 및 경제안정정책
1977	B. 올린 J.E. 미드	스톡홀름경제대학 케임브리지대학	스웨덴 영국	국제무역 · 국제적 자본이동의 이론적 연구
1978	H.A. 사이먼	카네기멜런대학	영국	경제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1979	T.W. 슈츠 A. 루이스	시카고대학 프린스턴대학	미국 미국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문제 중점 연구
1980	L.R. 클라인	펜실베이니아대학	미국	경제예측에 관한 연구
1981	J. 토빈	예일대학	미국	경제성장 모델에 화폐적 요인을 도입
1982	G.J. 스티글러	시카고대학	미국	산업구조 및 시장기능에 대한 정부규제의 원인과 결과분석
1983	G. 드브루	캘리포니아대학	미국	경제학에 세분석방법을 도입, 시장균형 이론 연구

선정위원회의 보고서는 먼저 학술원의 사회과학분과위에 제출되고, 이어 10월 중순경 학술원의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추천된 후보의 수상여부는 학술원 전체회의에서 비밀투표로 결정되는데, 학술원 회원 260명 중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이 투표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스톡홀름 소재 학술원 본부에서 수상자 결정에 관한 공식적 성명이 대중매체에 발표된다.

〈표 1〉의 계속

	수 상 자	소속대학	국 가	공 헌 업 적
1984	R. 스톤	케임브리지대학	영국	국민경제의 흐름을 추적하는 계정체계를 발전시킴
1985	F. 모딜리아니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미국	저축과 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1986	J.M. 부캐넌	조지메이슨대학	미국	정치·경제적 의사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론화
1987	R.M. 솔로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미국	경제성장에서의 생산요소를 측정하는 이론 정립
1988	M. 알레	파리10대학	프랑스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이론
1989	T. 호벨모	오슬로대학	노르웨이	경제학에 통계적 검증법을 도입해 계량경제학 이론을 확립
1990	M.H. 밀러	시카고대학	미국	자본시장의 균형에 관한 이론개발을 통해 기업의 재무관리 방법론에 기여
	H.M. 마코위츠	뉴욕시립대학	미국	
	W.F. 샤프	스탠포드대학	미국	
1991	R.H. 코즈	시카고대학	미국	경제와 법학을 접목시켜 체계화
1992	G. 베커	시카고대학	미국	인간행위를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
1993	R.W. 포겔	시카고대학	미국	경제이론과 계량적인 방법을 경제사에 적용, 경제 및 제도변화를 설명
	D.C. 노스	워싱턴대학	미국	
1994	J.C. 하사니	캘리포니아대학	미국	게임이론의 균형개변으로 무역 및 정보학, 환경학 등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
	J. 내쉬	프린스턴대학	미국	
	R. 젤텐	본대학	독일	
1995	R. 루카스	시카고대학	미국	거시경제학 분야의 합리적 기대사설 이론 정립
1996	J. 멀리스	옥스퍼드대학	영국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인센티브에 관한 경제 이론 확립
	W. 비크리	컬럼비아대학	미국	

다양한 학문적 업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상자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편리하다. 선정기준 상 다소의 자의성을 인정하면 지금까지의 수상자들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반 경제이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집단, 둘째 경제의 특정부문 또는 특정분야와 관련하여 혁신적 이론을 제시한 집단, 셋째 경제분석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응용·발전시킨 집단, 넷째 경제현상의 실증적 분석에 크게 공헌한 집단, 다섯째 좁은 의미의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조직과 그 과정까지를 포괄하는 이론체계를 제시한 집단 등이다.

경제이론의 발전에 끼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는 사무엘슨(P. A. Samuelson), 애로우(K. J. Arrow), 히스(J.R. Hicks), 그리고 드브루(G. Debreu) 등이다. 이들의 공헌에 있어서 공통되는 사항은 이론적 경제모형의 분석체계를 정립하여 일관성, 균형 및 안정, 그리고 최적화를 위한 제반조건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로 경제분석 방법과 경제시스템이 단순히 상호 의존적이라는 종래의 왈라스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일반균형분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경제의 특정 부문 또는 분야에 대한 이론에 있어서의 혁신적 공헌으로 가장

많은 수의 경제학자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들 집단은 앞의 일반이론경제학자 집단보다 이론적 추상화에서는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론의 응용이나 실증적 분석에서는 월등한 수준의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구분상 두번째 유형에 속하는 경제학자로는 올린(B. Ohlin), 미드(J.E. Meade), 토빈(J. Tobin), 스티글러(G.J. Stigler), 프리드먼(M. Friedman), 루이스(A. Lewis), 슐츠(T.W. Schultz), 사이먼(H.A. Simon) 그리고 모딜리아니(F. Modigliani), 솔로우(R.M. Solow), 밀러(M.H. Miller), 마코위츠(H.M. Markowitz), 샤프(W.F. Sharpe), 베커(G. Becker), 하사니(J.C. Harsanyi), 내쉬(J. Nash), 켈텐(R. Selten), 루카스(R. Lucas), 멀리스(J. Mirrlees) 그리고 비크리(W. Vickery) 등이 있다.

경제분석을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고 이를 적용·발전시킨 공헌으로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로는 프리시(R. Frisch), 틴베르헨(J. Tinbergen), 레온티에프(W. Leontief), 쿠프망(T. Koopmans), 알레(Maurice Allais) 그리고 호벨모(T. Haavelmo) 등이 있다. 칸트로비치와 쿠프망의 학문적 기여는 앞에서 살펴본 제1 및 제2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바, 이들의 공통된 업적은 자원의 최적배분에 관한 이론의 정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는 데 있다.

독창적 경제이론의 전제가 아닌 순수한 실증적 연구업적의 결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

적어도 지금까지는 경제의 특정 부문 또는 분야에 대한 이론에 있어서의 혁신적 공헌으로 가장 많은 수의 경제학자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들 집단은 앞의 일반이론 경제학자 집단보다 이론적 추상화에서는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론의 응용이나 실증적 분석에서는 월등한 수준의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는 쿠즈네츠(S. Kuznets)와 클라인(L.R. Klein)이다.

순수경제학의 영역을 벗어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조직 및 과정에 대한 탁월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는 1974년의 공동수상자인 뮈르달(G. Myrdal) 교수이며 포겔(R.W. Fogel) 교수와 노스(D.C. North) 교수는 경제제도의 변화를 경제이론으로 설명하였다. 1986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부캐넌은 순수경제이론 자체를 발전시켰다기보다는 현실의 정치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공공선택(public choice)이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독보적으로 개척·정립하였다. 끝으로 코즈(R.H. Coase) 교수는 법 현상에 경제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법경제학을 창시하였다.

II. 선정의 기준

경제학상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노벨상은 그 분야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이다.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특출한 업적에 대해 왜 노벨상과 같은 영예로운 상이 주어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간단히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면, 수준 높은 연구로 보다 많은 학자들을 유인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현실에서 운동가, 예

술가, 가수, 배우, 정치가 등은 대중매체를 통해 나름대로 일반대중의 인정을 받고 있으나, 학문적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은 노벨상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인식이 약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인재들이 학문 이외의 활동에 종사하게 되어 학문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덜 중시된다. 그 결과 인적자원의 학문분야에의 과소배분, 학문 이외 분야에의 과다배분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학자들이 학문적 기여의 중요성을 평가하여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를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수상자의 선정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며 경제학상의 수여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의 수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바, 첫째 경제학의 영역을 어떻게 정의·해석하느냐, 둘째 후보자가 수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느냐, 셋째 많은 유자격 후보자 중 어떤 순서에 의해 매년 수상자가 결정되어야 하느냐, 넷째 어떤 이유에서 공동수상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이 경제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학자에게 수여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론이지만, 이때 경제학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노벨경제학상 선정위원회에서는 경제학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전통적인 경제학뿐만 아니라, 인접분야에서 경제적 문제에 관해 이루어진 중요한 과학적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경제학이 인접과학의 제반 영역까지 그 관심범위가 확대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역사적 문제, 인구 및 가족과 관련한 사회적 과정, 그리고 정치적 과정 등의 분석에 경제이론의 기본개념과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학의 영역 확대 현상을 가리켜 스티글러(G. J. Stigler) 교수는 경제학을 제국주의적 학문(imperial science)이라고 했다.

사실 사이먼(H.A. Simon)에게 노벨경제학상이 주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경영과학(administrative science)에서의 큰 공헌 때문이며, 부캐넌(J.M. Buchanan)도 정치학과 경제학을 접목시킨 공헌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쿠즈네츠(S. Kuznets)의 노벨상 수상도 경제학의 인접분야인 경제사분야에서 그가 이룩한 공헌 때문이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뮌달(G. Myrdal)과 하이에크(F.A. Hayek)도 전통적인 경제학보다 학제(學際)적(interdisciplinary) 연구성과로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노벨경제학상은 여타 자연과학분야의 노벨상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준에 의해, 즉 특정한 구체적인 기여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수여된다. 경제학에 있어서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학문적 기여를 살펴보면 특정성(specificity)의 정도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온티에프(W. Leontief), 올린(B. Ohlin), 프리시(R. Frisch), 그리고 틴베르헨(J. Tinbergen)의 경우 특정성의 조건이 지나칠 정도로 만족되는 경우이고, 프리드만(M. Friedman), 하이에크(F.A. Hayek) 그리고 뮌달(G. Myrdal)의 경우 특성의 구체적 기여를 근거로 노벨상이 주어졌다기보다는 경제학 전반에 끼친 공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공적이 자격 있는 또는 가치 있는 공적인가? 따라서 어떠한 학문적 기여에 대해 노벨경제학상이 수여되어야 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 노벨상 선정위원회가 고려하는 기준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연구의 독창성(originality)이고, 둘째는 학문적·실천적 의미에서의 중요도, 셋째는 정부정책이나 이론적 연구에 끼친 영향 등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문적 기여만 심사대상이 되므로, 후보자의 정치적 색채, 사상적 배경, 정책기조 등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정위원회는 후보자의 연구결과의 질에 의해 판정하지 양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여럿 있을 때, 그들 모두가 한꺼번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순서를 어떻게 매겨야 하며, 이때 활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첫째는 눈에 띄게 중요한 공헌에 가능한 한 빨리 주며, 둘째는 다원론적 입장을 존중하여 다른 분야에서 다른

노벨상 선정위원회가 고려하는 기준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연구의 독창성(originality)이고, 둘째는 학문적·실천적 의미에서의 중요도, 셋째는 정부정책이나 이론적 연구에 끼친 영향 등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문적 기여만 심사대상이 되므로, 후보자의 정치적 색채, 사상적 배경, 정책기조 등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학문적 기여에 가능한 골고루 수상기회를 부여하며, 셋째는 비교적 오래 전에 이루어진 기여를 빨리 '처분' 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공동수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규정에 의하면 공동수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많은 학자 수는 3인이다. 공동수상도 개별 수상과 같은 정도로 영예로운 것이다. 공동수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공동작품이거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업적이 매우 유사하거나 가깝게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의 누락이 불공평을 초래할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업적에 대해 공동수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경제학 분야에서 28회의 수상 중 10번의 공동수상이 이루어졌는데, 이 모두 수상자의 업적이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뤼르달과 하이에크의 경우 그들의 학문적 연구에서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는 큰 대조를 이루는데 필자가 이들의 공동수상을 접했을 때 매우 의아해 하였으나 수상의 심사기준이 정치적 이념에 있지 않고 학문적 기여에 있음을 알고는 다소 이해가 된 바 있다.

술하여 경제학의 기반을 닦은 이래 경제학에 있어서의 이론적 혁신은 매 40년마다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카도(D. Ricardo)의 「정치경제학 과세의 원리」가 1817년에, 밀(J. S. Mill)의 「정치경제학원리」가 1848년에, 마샬(A. Marshall)의 「경제학원리」가 1890년에, 그리고 케인즈(J. M. Keynes)의 「일반이론」이 1936년에 저술되었는데, 경제학의 발전에 각각 획을 그은 이들 거봉(巨峯)들의 저서가 대략 40년의 간격을 두고 저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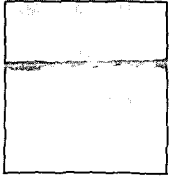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학교에서, 정부에서, 연구소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평생을 바쳐 경제학을 생각하고 쓰고 다듬고 있지만,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출판된 지 60년, 그가 서거한 지 5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경제학의 또다른 획을 긋는 경제학자는 불행히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케인즈와 같은 큰 저택을 짓지는 못했으나 그들 나름대로의 개성 있는 아담한 양옥집을 지은 셈이다. 이들의 학문적 기여가 대혁명의 물결을 형성하는 작은 기운을 조성할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 **김기**

Ⅴ. 경제학의 대혁명을 기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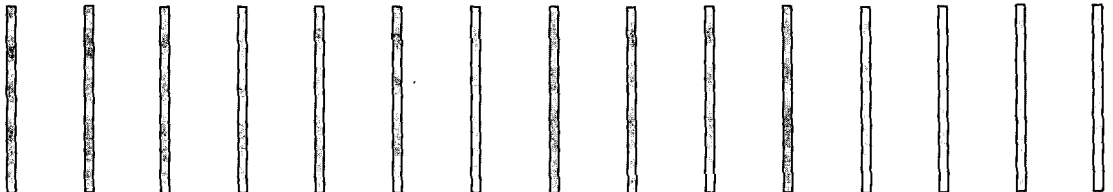
스미스(A. Smith)가 1776년에 「국부론」을 저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흐름

1.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
2. 199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
3.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



I.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

※ 이 원고는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에서 10월 9일에 발표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과 10월 24일에 발표한 「9.3대책 및 후속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의 내용입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추진배경

-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음.
-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근본 원인은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악화되었는데 기인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경제상황이 좋아지기는 힘들 전망임.
 - 경쟁력 약화로 인해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0년전에 비해 대폭 절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

	1985년 말	1995년 말	1996. 10. 7
원/100엔	443.7	749.2	736.1

- 임금·금리·물류비 등 요소비용이 외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훨씬 상회
 - 높은 금리와 취약한 재무구조로 금융비용부담이 가중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시장금리(1995 평균)	13.8	6.3	3.0	7.3
제조업부채비율(1994)	286.8 ¹⁾	166.5	209.3	87.2

주: 1) 한국은 1995년 수치임.

○ 사회전반의 소비분위기 확산으로 씬씀이가 증대

(단위 : %)

	1994	1995	1996. 1~8
위스키수입	68.4	60.1	52.9

- 한편 세계 각국은 정부부문 생산성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한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미국은 재정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최근 높은 성장 속에 고용안정을 시현
 - 최근 들어 독일도 복지축소 등 재정개혁을 추진중
 - 뉴질랜드는 정부조직·인사·예산 등 회계제도의 개편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아르헨티나는 경제회생의 유일한 방법은 고용조건 완화라고 보고, 임금구조·근로시간·해직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편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을 추진중
 - 선진국 기업들도 기업통합 및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
- 따라서 우리도 21세기 선진경제 진입을 위하여는 과감한 구조개선을 통해 시급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슬선수범과 기업활력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9.3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그 후속조치로서 경쟁력 강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1년 이내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

추진방안

- 공공부문이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추진
- 아울러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 노력을 뒷받침

공공부문의 생산성 높이기

1) 정부 예산집행방식의 개선

- 정부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정부는 기본적인 수요 또는 기준만 제시하고, 민간기업이 설계부터 공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턴키' (Turn-Key) 발주방식 적용을 확대
 -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공사 중 10% 수준만 턴키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 * 1993년 256건 중 21건, 1994년 423건 중 47건, 1995년 542건 중 66건
- 민자유치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턴키' 입찰방식으로 시행(현재는 대부분 정부가 실시설계 후 민자유치)
- 턴키대상 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제도의 활용을 확대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
- 경상적 경비 지출 절감을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 종이·유류·해외여행경비 등의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 사무용품비를 부서단위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집행에 따라 절약되는 예산은 각 부서운영비로 사용토록 허용
 - 10월중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보완하여 시달
 - 부처별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의 일정분을 해당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
 - 조직축소 또는 결원의 확대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잉여재원 발생시, 해당기관에 잉여재원의 일정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 정부공사 중 '턴키' 방식 발주 확대를 위해 중앙건설설계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세부기준을 조정(1996년 11월 초)
- 경상적 경지비출절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96년 예산집행지침'을 수정·통보(1996년 10월 말까지)

〈법령 제·개정사항〉

- '턴키' 활성화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96년 4/4분기)
 - '턴키' 실시·설계심의를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에 이관하고, 설계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
- 인건비 예산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개정

2) 정부인력과 조직의 감축 운용

- 사무보조원 등 단순기능인력과 현업관서인력은 4년간 10,000여명 감축
 - 전산화·자동화로 보조인력을 대체하고, 철도·체신 등 현업기관 경영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
- 중간 감독기관의 광역화 및 일선기관의 통합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리적 업무분담 체계를 구축(파출소 100여개 등 통폐합)
- 민간이양이 가능한 업무는 최대한 민간에 이양
 - 병원, 항만시설운영 등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민간이양 추진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 단순기능직과 현업관서 인력의 업무실태 및 인력활용 현황을 조사(1996년 10~11월)하여 연도별 인력감축 추진계획을 수립(1996년 12월)
- 중간감독기관의 광역화 및 일선기관의 통합추진 대상기관을 검토(1996년 4/4분기)
 - 1997년 1월중 대상기관 선정, 통합시 장단점, 감축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 민간이양 가능업무를 발굴(1996년 4/4분기)하여, 1997년부터 구체화

〈법령 제·개정사항〉

- 각 부처 직제 등 관계법령 개정(1997년부터)

3)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영 혁신

-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투자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거나 생산성을 10% 높이는 운동을 전개
 -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
 - 1997년 투자기관 예산의 편성기준이 되는 예산편성 지침(10월중 시달예정)에 반영하여 시행
 - 생산성 향상 등으로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물품의 가격을 최대한 인하
 - 우선 포철의 미니멀에서 생산하는 핫코일의 내수 판매가격을 10월 말부터 8% 인하(25만 6천원/톤 → 23만 6천원/톤)
 -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와 시외전화 요금을 인하하고, '114' 유료화 등 요금체제도 조정
 - 기관별 생산성 향상결과를 평가하여, 투자기관 상여금 산정시에 반영
 -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분은 해당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
 - 5개 권역별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한국수출, 서부, 중부, 동남, 서남)을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개편하여 인원을 대폭 축소(관리공단 5개를 1개로 통폐합)
 - 공단보유 자산을 매각하여 임대공단 및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추진
 - * 열병합발전소는 민간기업 또는 실수요자단체에게 매각
-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에 경쟁을 촉진
 - 공기업은 민영화 이전이라도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경영효율을 증진
 -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신규 발전소 건설(원자력 제외)은 한전과 민간기업이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여 건설

(단위 : 만kw)

	1995~2006	2007~2010	계
석탄	1,510(27기)	-	1,510 (27기)
LNG 복합	1,204(28기)	540(12기)	1,744 (40기)
양수	280(10기)	50 (2기)	330 (12기)
수력/기타	186(24기)	-	186 (24기)
합계	3,180(89기)	590(14기)	3,770(103기)

- 전력산업에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전의 전원입지 확보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분담
- 민간기업은 발전소를 건설·소유·운영하되, 생산전력은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공단개발시 정부는 사업규모, 사업지역 및 유치업종 등 제반기준만 제시하고,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민간 등 누구든지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단을 개발할 수 있는 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단개발이

최대한 경쟁체제가 되도록 개선

- 현재는 한국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사실상 과점 개발체제이나, 앞으로는 수자원공사·민간기업 등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담금 면제 등 제도를 보완
-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도 경쟁을 도입
- 정부투자기관 경영에 자율성을 확대
 - 이사회 제도를 개편하여 고객·금융기관·업계·학계 참여를 확대
 - * 현행이사 : 주무부처 공무원, 공기업 경영관련 학계, 연구기관, 관련단체 인사 등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폐지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감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
- 우정업무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인력절감 및 우정적자를 개선
 -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소속기관(지방체신청, 우체국)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
 - 연차별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시행
 - 조직·예산·인사·수수료결정·우정재산의 활용 등에 있어 부분적으로 정부조직법, 예산회계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기 조치사항〉

-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방안을 1996년 11월 말까지 수립토록 지시(1996년 10월 15일)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 정부투자기관의 1997년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동결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97년 투자기관 예산편성 공동지침'에 포함하여 시달(1996년 10월 말까지)
-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물품의 가격인하 방안, 투자기관의 경쟁체제 강화방안 등을 각 기관장 책임하에 수립(1996년 11월 말까지)
-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와 시외전화요금 인하 및 '114' 유료화를 위해 1996년 12월까지 시설보완,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실시하고, 확정되는 대로 시행
- 5개 국가관리공단을 통합하기 위해 1996년 10월중 통합추진작업반을 구성하고, 금년 말까지 5개 공단 해산 및 통합공단 설립을 추진
- 공단개발시 누구든지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단을 개발할 수 있는 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지침'을 제정(1996년 4/4분기)

〈법령 제·개정사항〉

- 1997년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 이사회 제도개편, 회계규정 폐지, 외부회계 감사제도 도입, 생산성 향상 위주의 경영실적평가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노력 지원

4) 임금안정

- 고임금이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임금안정을 유도
 - 고임금을 선도하는 주요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
 -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별 노사협의를 권장하여 국제경쟁력을 감안한 임금조정이 되도록 유도
 - 임금체계 단순화와 성과급·능력급 임금제도로의 전환 지도
 - 한국노동연구원에 구성되어 있는 '임금제도개선연구단'에서 임금체계의 실태조사 및 국제비교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
 - * 임금제도개선연구단 : 한국노동연구원장(단장), 관계공무원 4인, 학계 7인, 노총·경총 각 1인으로 구성
 - * 임금구성비(1995년) : 정액급여(67.8%), 특별급여(23.2%), 초과급여(9.0%)
- 노동관계법은 노동시장 유연성면에서 경쟁국 수준을 감안하여 개선
-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 도모
 - 여성인력 활용촉진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융자하는 제도를 신설
 - * 지원조건 : 연리 3~3.5%, 5년 상환, 3억원 이내
 - * 시행시기 : 1996년 10월부터
 - * 고용보험기금 총 규모(1995) : 3,542억원
 - 퇴직 고금·중견인력의 재활동 촉진을 위해 경총에 설치(1996년 7월)된 고금인력 정보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인상
 - * 고용조정 지원 내용
 - 전직훈련지원금 : 전직훈련을 실시하고 통상임금을 지불한 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전액 및 임금의 1/2 지원
 - 인력재배치지원금 :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근로자의 60% 이상 유지한 기업에 대해 재배치 근로자 임금의 1/2 을 1년간 지급
 - 휴업수당지원금 : 소정 근로일수의 1/15 이상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한 기업에 대하여 지급된 휴업수당액의 1/2 지급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지정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한 기업에 대해 새로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을 조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원
 - 기능인 우대시책을 통한 일하는 풍토 조성
 - * 현행 기능인 우대시책
 - 최고기능 보유자(명장) 등에 대한 포상 및 명장작품 전시회 개최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에게 훈장 수여 및 기능장려금 지급
 - 기능자적소지자에 대한 사업 인허가시 우대
 - 근로자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지원
 - * 현행 주요 근로자지원제도
 - 근로자주택제도, 기숙사건립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종업원 지주제, 근로자 장학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의료비 대부

〈기 조치사항〉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용자 실시(1996년 10월부터)
 - * 용자금액 : 1996년 50억원, 1997년 100억원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1996년 10~11월)를 바탕으로, 금년 말까지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법령 제·개정사항〉

- 노동관계법령의 개정

5) 금융비용 부담 완화

- 금융기관의 생산성 10% 증대운동을 전개
 - 조직혁신 및 인사체도를 개혁하고 예산운용의 합리성을 제고
 - 금융감독기관, 국책은행, 정부출연 및 출연기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
 - 금융기관의 경영혁신 정도에 따른 해외차입 차등허용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인건비 등 경비절감을 유도
 - 금융부문별 칸막이식 금융상품 및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대출원칙 폐지 등
 - * 보험자금의 대출대상을 '보험에 가입한 개인 및 기업'에서 '모든 개인 및 기업'으로 확대
 -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산업 개편 및 구조개선을 추진
 - 증권업무의 자율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 확충 등 생명보험산업의 건전화 방안 추진
 - 리스·카드·할부금융회사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통합
 -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퇴출절차를 간소화('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
- 자금증개 활성화 및 금리안정을 유도
 - 금리의 하향안정화 유도를 위하여 통화운영방식을 개선
 - 적정 유동성 공급 및 통화의 간접관리 정착 등
 -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금리입찰을 금지
 - 금리입찰 관행 지속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흡수
 - 콜중개 전문회사의 자금증개(1996년 10월 말)로 단기자금시장 통합 촉진
 - 한국자금증개주식회사에 대한 인가 및 영업개시(1996년 10월 말)
- 기업활동 등과 관련된 해외자금의 공급을 확대
 - 수출선수금 한도 확대 및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기간 연장

- 수출선수금 영수 한도 확대 : 수출실적의 15% → 20%
-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을 30일 확대(지원효과 20~30억달러)
- * 현행 : 중소기업 90~180일, 대기업 60~180일

현행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용자대상

(단위 : %)

생산	구매	용자비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100
대기업	중소기업	100
중소기업	대기업	70

- 국산자본재 구입용 외화대출을 대기업에도 허용
 - 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는 경우, 대기업에도 상업차관 허용
 - * 현재는 중소기업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에 대해서만 자유화(1996년 10월부터)
- 선박금융지원 규모를 확대
 - 국제수지·통화·환율 등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BBC자금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

BBC자금 지원현황

(단위 : 억달러)

	1994	1995	1996
한도	10.0	12.0	18.0
집행	6.0	11.8	-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1997년 출연예산증액분(1,000억원)을 유망 중소기업 등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적극 활용

<기 조치사항>

- 수출선수금 영수 한도 확대(수출실적의 15~20%) 및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 30일 연장(1996년 10월 21일)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 금리하향 안정화 유도를 위해 통화운용방식 개선을 검토
- 금융부문별 칸막이식 규제완화방안을 마련(1996년 11월중)
-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금리입찰금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1996년 10월 말)
- 국산자본재구입용 외화대출을 대기업에도 허용(1996년 11월부터)
 - * 용자비율 : 소요자금의 70%

〈법령 제·개정사항〉

- 대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허용을 위해 '외화 여수산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6) 공장용지 부담완화

- 공단용지 가격을 평균 25% 인하
 - 공장 건설시까지의 각종 경비를 대폭 경감
 -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8종의 부담금을 면제(수도권 지역은 제외)

	부담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부담금 • 산지전용부담금 • 개발부담금 및 공유수면개발부담금 • 대체농지조성비 • 대체조림비 • 대체초지비 • 공유수면점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지가의 50% 공시기작의 50% 개발이익의 100% 전 : 2,160원/평방미터 답 : 3,600원/평방미터 696원/평방미터 503원/평방미터 인근지가의 1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div> ⇒ 면제

- 공단관리비(현행 : 분양가의 2%) 징수를 폐지
- 산업단지 관리비(분양가의 2%) 폐지
- * 대금 완납전이라도 무보증 사용 허용
- 공단개발자가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확대
- 전기공급시설 설치비는 한국전력에서 전액부담(현재 50% → 100%)
- 공단의 폐수처리장 건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에 준하여 지원
-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
 - 시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70%, 광역시에 대해서는 용자(연리 5%, 5년 거치 10년 상환)
- 도로·녹지의 비율을 조정하여 공장용지면적을 확대
- * 공단 내에 조성되는 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운동장, 상·하수도, 유원지 등 공공시설 확보율을 하향조정

현행 도로·녹지 의무확보 비율

생산	구매	용자비율
1㎢ 미만	8 이상	5~7.5
1㎢ 이상~3㎢ 미만	10 이상	7.5~10
3㎢ 이상	10 이상	10~13

- 장기 미분양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대폭 가격인하하여 분양 촉진
 - 대불(122만평)·북평(32만평)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에 대하여는 5년 무이자 할부판매 실시
 - 기 분양된 용지에 대해서도 미납분에 대한 이자를 면제
 - 1992년 5월 이후 분양실적이 없는 김천 구성지방 산업단지(16만평)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분양가를 30% 인하
-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공장증설 범위를 확대 (현행) 기준 공장면적의 '25% 이내'에서 증설 가능 → '50% 이내'로 확대
 - * 첨단업종 : 컴퓨터, 전자변성기, 반도체, 축전기, 유선통신, 무선통신, 영상음향기기, 전자집적회로, 사진 및 광학기기, 자동차
 -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서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
 - * 현재는 수도권 내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서 동일한 건물을 이용한 첨단업종으로의 전환만이 허용되었으나 향후에는 신축·개축·증축 등을 통한 업종전환이 가능
 - 도시형 업종제도를 개선하여 도시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
 - 도시형 업종 : 첨단업종,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업종,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도시형 업종(펄프제조업, 윤활유제조업 등)이 아닌 업종)
 - 현재 총제조업종 585개 중 336개 업종이 도시형 업종
 - 현재 건축면적 200㎡로 제한되어 있는 근린생활 시설 내에 공장입주 허용규모를 상향조정
 - 공장설립 관련규제를 완화
 - 공장건축면적 500㎡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공업배치법상 공장등록제도를 폐지
 - 공장건축면적을 현행 200㎡(약 60평)에서 500㎡로 상향조정할 경우 공장등록절차가 간소화되고 수도권 내 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음
 - 공업지역 내에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 업종변경의 경우 환경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 필요없도록 함
 - 장래 공장용지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 공장면적률을 완화
 - 기업은 공장설립 신고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기준면적률만큼의 공장을 설립해야 하나, 동 면적률을 하향조정시에는 경기침체시에도 공장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더는 등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공장기준면적률=공장건축면적/공장용지면적×100
- 국유지를 공장입지로 활용토록 지원
 -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건설을 허용하여 산업용지로의 활용도를 제고
 - 현행 국유재산법(제24조)에 의하면 임대국유지상에는 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일반 국유지 임대의 경우보다 저가로 임대
 - 현행 국유지 임대료 : 당해 재산가액의 5% 이상

〈기 조치사항〉

- 김천 구성지방 산업단지 분양가 30% 인하(1996년 10월 14일)

- 평당 분양가 : (중전) 24만원 → (조정) 17만원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 대불·북평 미분양용지는 5년 무이자 할부판매(1996년 11월부터)
-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구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1996년 10월 말까지 관계부처간 협의 완료하여 확정
- 공장기준면적을 완화(평균 30% → 20%)를 위해 '공장입지 기준고시'를 개정(1996년 11월)
- 녹지를 상한규모 및 적정도로를 설정을 위해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1996년 11월중)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과정에서 공단조성시 녹지확보 의무비율이 산업입지 개발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

〈법령 제·개정사항〉

-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수도권 제외지역)
 - 개발부담금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1997년 상반기)
 - 농지조성비 면제 : '농지법' 시행령 개정(1996년 12월)
 -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 면제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996년 12월)
 - 대체조림비 면제 : '산림법' 시행규칙 개정(1996년 12월)
 -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 '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996년 12월)
 - 공유수면 점용료, 공유수면 개발 부담금 면제 : '공유수면관리법' 및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개정(1997년 상반기)
- 공단관리비 징수를 폐지하고,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비도시형 업종의 도시 내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형 업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96년 4/4분기)
- 농지에서 제조업체가 용도변경할 경우 승인없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1996년 4/4분기)
- 소규모 공장(500㎡ 미만)에 대한 공장등록제도 폐지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1997년 상반기)

7) 물류비 절감

- 화물운송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을 촉진
 - * 현행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제로 되어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만을 별도로 규정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금년중 제정
 - 화물운수업종을 현재 6개 업종(노선, 전국, 특수, 용달, 일반구역, 컨테이너 일반)에서 3개 업종(개별, 용달, 종합)으로 단순화하고, 운임신고제도 폐지
-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를 촉진
 - '종합물류정보망'을 금년 1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거쳐 1998년부터 상용화하고, 앞으로 통관·금융망과도 연계

- 현재 34%에 이르는 화물자동차의 공차율을 점차 축소
- * 공차율 : 화물수송을 마치고 돌아올 때 빈차로 돌아오는 비율
- * 종합물류정보망은 1996년 1월부터 한국통신과 KLnet에서 구축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과 '차량 및 화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화물운송시스템'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
- 수송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위해 수송용 표준팔레트 보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표준화된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물류표준마크제'를 도입

○ 물류시설을 확충

- 5대 권역별로 추진중인 물류기지(복합화물터미널) 개발사업을 1999년까지 완공
 - 수도권(의왕시 부곡), 부산권(양산), 중부권(청원, 연기), 호남권(장성), 영남권(김천)
- 대도시 주변 광역전철망도 철도청 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건설하도록 유도하여 경쟁체제를 구축
-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민자에 의한 항만투자를 촉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정조건하에 제한적으로 현금차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 SOC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익성 보장방안 등 적극적인 유인대책을 10월 말까지 마련

<기 조치사항>

-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 분양가 30% 인하(1996년 10월 14일)
 - 평당 분양가 : (종전) 24만원 → (조정) 17만원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 SOC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자유인대책을 1996년 10월 말까지 마련

<법령 제·개정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운임신고제를 폐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1996년 정기국회)
- SOC 건설공사 추진효율화를 위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1996년 정기국회)

8) 규제개혁의 추진

-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협회 등에 위임·위탁된 규제사무는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하여 원칙철폐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 의무고용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최소한으로 운용
 - * 현재 24개 법률에 의거 27종의 법정의무고용제도 운영
 - 안전과 관련된 의무고용은 공단지역 내 풀(Pool)제 또는 전문대행인 활용을 확대

- 사회정책적인 목적(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이나 안전과 관련없는 의무고용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
- 행정처분시 법적 근거없이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구하는 행정행위를 지양
-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규제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위탁된 규제사무 총 1,479건을 정비대상으로 하여 금년 말까지 철폐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실태조사 및 관계전문가 회의(1996년 10~11월) 후 개선방안 마련(1996년 12월)
- 행정처분시 법적 근거없이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구하는 행정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실태를 조사(1996년 10월)하여 개선방안을 수립(1996년 11~12월)

〈법령 제·개정사항〉

-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내의 의무고용제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1996년 4/4분기)를 거쳐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1997년 상반기중)

9) 기업의 경쟁촉진 및 부담완화

- 중소기업의 경쟁을 촉진
 - 단체수의계약 품목(289개)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점진적으로 전환(1997년 : 10%)
 - 1997년도 단체수의계약 품목 지정시(1996년 12월경) 대상품목을 고시한 후 1997년부터 적용
 - * 단체수의계약 :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배타적 유통관행의 개선 추진
 - 이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
 -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형성·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시 경쟁도입 등 독과점 구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
- 원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 관세의 무세화 추진
 - * 비경쟁 기초원자재로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 : 망간광, 동광, 아연광 등 원광석, 원모, 펄프, 고철 등
 - * 1996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실행관세가 무세인 품목 : 유연탄, 원목, 철광석, 원면, 천연고무, 선철(세목 기준 39개)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축소하기 위하여 1997년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확정·공고(1996년 12월)
- 독과점적 시장구조개선을 위해 우선 개선대상 품목(2~3개)에 대한 시장구조를 분석(1996년 12월)하여 독과점 폐해시정과 시장구조개선 병행추진(1997년부터)

〈법령 제·개정사항〉

- 원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세화를 위해 1996년 말까지 가칭 '할당관세 운영규정'을 제정(시행 : 1997년 1월부터)

10) 정보통신 및 자본재산업 육성

- 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의 정보화 추진을 가속화
 - 물류와 농수산물의 정보화로 유통비용을 절감
 - 창업관련 정보의 DB구축으로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
 -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제품 홍보로 마케팅 비용 절감
 - *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시범사업 지원(1996년) 및 정부예산지원을 통한 검색시스템 개발(1997년)
-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 정보통신분야 전략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인력양성체제를 강화
 - 기업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전과사용료 평균 10% 인하 추진
 - * 연간 부담경감액 : 200억원 수준
 - 중소 S/W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강화
 - 고가 S/W개발장비, 기술정보 제공 등을 위한 S/W지원센터 설립확대(1996년 : 서울, 1997년 : 지방 4개소)
 - 게임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S/W기술개발관련 정보화촉진기금 지원확대(1997년 : 1,500억원)
 - 영세업체의 보충사업 등을 위한 S/W 공제사업 추진(1997년 : 50억원)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 정보통신·게임·소프트웨어 산업발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1996년 11월 까지)
- 자본재 전략품목 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점검강화방안을 마련(1996년 4/4분기)

〈법령 제·개정사항〉

- 이동전화 등 무선국에 대한 전과사용료를 10% 내외 인하하기 위하여 전과법 시행령을 개정(1996년 12월)

11) 기술혁신과 창업활성화 지원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 대기업의 창업투자회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
 - * 현행 10대 대기업은 20% 이내에서만 창업투자회사 지분 소유 가능(소유분산 우량회사는 예외 인정)
 - 창업투자회사의 전환사채 인수한도 폐지
 - * 현행 한도 : 주식인수 규모의 200% 이내
 - 지방 창업투자회사의 지방투자 의무비율 폐지 등

- 현행 의무비율 : 투자액의 50% 이상을 지방창업기업에 투자
-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제도 시범실시 및 확대
 -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담보대출을 실시함으로써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활성화 유도
 -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무상양여 및 연구원의 기술집약형 창업을 촉진
 - 1~2년 내 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무상양여
 - 창업하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휴직(3년)을 허용하고, 시설·기술·정보지원 및 자금 알선
 - 해외초빙 과학기술자(1997년 130명)의 중소기업 파견확대
 - 고부가가치 성장선도 기업인 신의약품·생명공학·첨단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과학기술 분야 집중 개발지원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 창업관련 정보의 DB구축 추진
 - 정보수집(1996년 말), DB구축(1997년 상반기) 및 시범운영(1997년 하반기)
- 기술력 평가에 의해 기술담보대출제도 시범실시(1996년 11월)

〈법령 제·개정사항〉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1996년 11월)
 - 대기업의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 폐지
 - 창업투자회사의 전환사채 인수한도 폐지
 - 지방창업투자회사의 지방투자 의무비율 폐지

12) 기업의 경영혁신 유도

- 백화점식 경영에서 탈피하여 한계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전문화를 유도
 - 계열사간 부당 내부 거래 등을 통한 비효율적 경영을 자제
- 대기업이 원가절감부담을 하청업체 등에 전가하는 행위는 방지
- 경기후퇴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개선
 - 기업의 차입경영행태의 지양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성을 확보
 - 금년 8월부터 기업공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외부감사의 자율성·독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등 개정 추진
- 국내의 높은 임금 등을 이유로 외국에서 쉽게 공장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고유 브랜드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등의 노력을 강화
- 노사가 한 배를 타는 각오로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비효율적 경영을 쇠신하기 위해 1994년에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시정조치를 당한 22개 기업집단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 실시(1996년 12월)
- 대기업이 원가부담을 하청업체 등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건설 등의 불공정 하도급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1996년 11월)

13) 소비의 건전화 추진

- 최근 과소비, 소비의 고급화 및 불합리한 소비행태의 만연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이 필요
 -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범국민적 생활개혁운동을 전개
 - 음식점의 과도한 음식제공을 억제하고 '좋은 식단체'를 확산
 - 외식풍조를 자제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
 - 유통, 전기 등의 소비절약유도를 위해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
 - 국제가격보다 낮은 휘발유, 경유, 등유, LNG,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산업·수송·가정 등 각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
 - 건전 가정의례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감소한 가정의례를 정착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를 발족하여(1996년 11월) 낭비적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추진
- 건전 가정의례모델을 개발·보급(1996년 12월)

추진체계

-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과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인사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경제동향 점검회의를 개편)를 구성하여 월 1회 회의를 개최
 -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두고, 각 부처에는 개별 과제별로 1급을 반장으로 하는 작업반을 구성·운영

Ⅱ. 199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

※ 이 자료는 재경경제원 예산실 예산제도과에서 10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199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의 내용입니다.

1. 1997 공공기금운용계획 개요 및 특징

(1) 기금운용계획 개요

- ▷ 76개 전체기금 중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은 36개이며 그 중에서 199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금은 33개임
- 국민건강증진기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등 미조성기금 3개는 기금운용계획(안)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공공기금 현황〉

(단위: 개)

	1996	1997
전체	36	36
조성	33	33
미조성	3 ¹⁾	3 ²⁾

주: 1) 국민건강증진기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2) 국민건강증진기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신설예정)

- ▷ 1997년중 공공기금의 신규 조성규모는 19조 4천억원 수준
- 신규 조성내역을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5개 기금의 합계가 18조 1천억원으로 93.4%를 차지
 - 공공자금관리기금 6조 8천억원, 국민연금기금 6조원, 국민주택기금 3조 4천억원, 국채관리기금 1조 6천억원, 고용보험기금 4,300억원
 - 기금간 1997년 말까지의 총계기준 조성규모 누계는 104조 4천억원
- ▷ 1997년도 공공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1996년보다 0.6% 증가한 46조 2천억원 수준

(단위 : 억원, %)

	1996(A)	1997(B)	B-A
운용규모	459,520	462,263	2,743(0.6)

주: 기금운용규모 증가율 : 16.3%(1995), 16.6%(1996), 0.6%(1997)

(2)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특징

- ▷ 기금운용규모는 0.6% 증가에 그쳐 경제안정기조 유지에 기여
- 기금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인 기금관리비 증가도 1.8% 수준으로 억제
 - 업무추진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
 -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직원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처우개선도 5% 수준으로 조정
- ▷ 33개 공공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1996년보다 16.6% 감소한 7,300억원 수준을 지원
- 종자기금 등 연례적 출연기금에 대한 출연을 중단
- 양곡증권발행제도 변경(1년채 → 3년채)에 따른 이자지급 소요감소로 출연금 지원소요 감소(-1,712억원)
- ▷ 각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을 확대하여 SOC 투자재원 등으로 활용

(단위 : 억원, %)

	1996(A)	1997(B)	B-A
예탁규모	51,550	62,400	10,850(21.0)

주: 기타기금을 포함한 전체기금보유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는 7조 5,500억원으로 1996대비 15.0% 증가

2. 재정효율화를 위한 기금정비 및 정부출연금 지원방식 조정

(1) 기금정비

- ▷ 1993년 이후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기금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체 기금수가 1993년 114개에서 1996년 10월 현재 76개로 대폭 감소
- 예산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전환 : 농어촌발전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 등 11개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금 및 영세기금 등 통폐합 : 중소기업 창업 지원기금, 농업산학협동기금 등 41개

기금정비실적

(단위 : 개)

	1993	1994	1995	1996	계(1994~96)
기존기금		114	106	99	
신설		6	4	4	14
정비		14	11	27	52
정비후 기금수	114	106	99	76	

- ▷ 1997년중에는 가스안전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정비할 계획임
- 가스안전관리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통합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조정에 따라 폐지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신설
- 잠업진흥기금은 잠사류수입자유화에 따라 1997년 7월 1일부터 폐지 예정

▷ 기존 기금을 폐지·통합하는 정비작업 이외에도 신규기금 설치를 최대한 억제

(2) 정부출연금 출연방식 조정

▷ 76개 기금 중 27개 기금에 대해 1997년 예산에서 출연금을 지원하였으며 전체 출연금 지원규모는 1996년 대비 0.7% 증가

(단위 : 억원, %)

	1996(A)	1997(B)	B-A
정부출연금	18,038	18,165	0.7

- ▷ 기금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출연하던 기금에 대한 지원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지원방식을 변경하거나 출연을 중단
- 정부출연금을 융자방식으로 전환 : 종자기금, 사학진흥기금
- 출연을 중단하고 일반회계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예산소요를 경감 : 문예진흥기금,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
- 현재 조성된 기금운용수익만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금에 대해 출연을 중단 : 과학교육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 중소기업 지원 등 당면한 경제애로 타개나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에 대한 출연은 확대
- 신용보증기금(3,500억원 → 4,0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1,500억원 → 2,000억원),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837억원 → 1,374억원), 정보화촉진기금(2,143억원 → 2,342억원), 수출보험기금(1,300억원 → 1,800억원) 등

〈참고〉 1997년도 정부기금운용계획 종합

1. 199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

공공기금 현황

(단위 : 개)

	1996년	1997년	증감	비고
계	36	36	-	
조성기금	33	33	-	<1997년 폐지기금 1개>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과학기술처) <1997년 조성기금 1개> • 여성발전기금(정무 제2장관실)
미조성기금	3 ¹⁾	3	-	<1997년 신설자금 1개> •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학기술처) ²⁾

주: 1) 국민건강증진기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2) 동 기금의 설치근거 법률인 원자력법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상정될 예정(1997년 조성 및 운용계획이 미수립 상태)

기금운용현황

(단위 : 억원, %)

	1996년 계획(수정)		1997년 계획		증감	
	누계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순계 ¹⁾	394,943		386,937		-8,006	-2.0
총계	459,520	100	462,263	100	2,743	0.6
사업비	282,285	61.4	293,316	63.5	11,031	3.9
경상지출	73,925		98,710		24,785	33.5
자본지출	8,067		7,382		-685	-8.5
용자지출	200,293		187,224		-13,069	-6.5
차입금상환	74,449	16.2	60,071	13.0	-14,378	-19.3
기금관리비	1,920	0.4	1,955	0.4	35	1.8
여유자금	99,854	21.7	105,901	22.9	6,047	6.1
기타지출	1,012	0.2	1,020	0.2	8	0.8

주: 1. 국채관리기금 : 1조 3,027억원(1996), 1조 2,926억원(1997)

2. 공공자금관리기금 : 5조 1,550억원(1996), 6조 2,400억원(1997)

1) 이중계상된 국채관리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기금간의 전출입액(1996 : 6조 4,577억원, 1997 : 7조 5,326억원)을 제외한 규모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원, %)

	1995년말 누계	1996년 계획(수정)			1997년 계획		
		당년	누계	구성비	당년	누계	구성비
순조성액 순계 ¹⁾	602,348	126,804	729,152		118,625	847,777	
(A-B) 총계	658,440	191,381	849,821		193,951	1,043,772	
총조성액(A)	1,323,915	344,359	1,668,274	100	355,781	2,024,055	100
정부출연	70,524	12,864	83,388	5.0	10,230	92,816	4.6
민간부담금	185,334	79,647	264,981	15.9	90,004	354,985	17.5
법정부담금	178,809	78,674	257,483	15.4	89,098	346,581	17.1
임의부담금	6,525	973	7,498	0.4	906	8,404	0.4
장기차입금	818,272	191,820	1,010,092	60.5	173,569	1,183,661	58.5
정부차입	47,872	26,194	74,066	4.4	26,358	100,424	5.0
국공채발행 ²⁾	513,972	87,321	601,293	36.0	66,860	668,153	33.0
금융기관차입	90,607	1,850	92,457	5.5	547	93,004	4.6
기타민간차입금	165,821	76,455	242,276	14.5	79,804	322,080	15.9
운용수입	221,119	60,424	280,310	16.8	81,423	361,143	17.8
기타 ³⁾	28,666	-396	28,270	1.7	555	28,825	1.4
사용액(B)	665,475	152,978	818,453	100	161,830	980,283	100
경상사업비	141,067	73,925	214,993	26.3	98,710	313,375	32.0
차입금상환	501,578	74,449	576,027	70.4	60,071	636,098	64.9
기금관리비	9,854	1,920	11,774	1.4	1,955	13,728	1.4
기타비용	12,976	2,684	15,660	1.9	1,094	16,754	1.7

주: 1. 공공자금관리기금 : 5조 1,550억원(1996년), 6조 2,400억원(1997년)

2. 국채관리기금 : 1조 3,027억원(1996년), 1조 2,926억원(1997년)

1)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채관리기금과 타기금과의 전출입액(1996년 : 6조 4,577억원, 1997 : 7조 5,326억원)을 제외한 규모

2) 국채관리기금의 국채발행액 2조 1,900억원, 외평채권 6,500억원, 양곡증권 1조 3,200억원, 주택채권 2조 5,260억원(1997년)

3) 외국환평형기금 환차익 395억원 등(1997년)

기금별 순조성 규모

(단위 : 억원)

	1995년말	1996년 계획(수정)		1997년 계획	
	누계	당년	누계	당계	누계
순계	602,348	126,804	729,152	118,625	847,777
총계	658,440	191,381	849,821	193,961	1,043,772
여성발전기금	0	0	0	124	124
국민투자기금	4,392	-2,550	1,842	-2,312	-470
국채관리기금	29,415	19,009	48,424	15,581	64,005
외국환평형기금	40,629	-5,177	35,452	147	35,599
대외경제협력기금	7,972	2,582	10,554	2,666	13,220
공공자금관리기금	65,169	70,186	135,355	67,863	203,218
남북협력기금	2,350	253	2,603	389	2,992
군인연금기금	4,255	-826	3,429	215	3,644
군인복지기금	0	762	762	398	1,160
방위산업육성기금	729	154	883	164	1,047
과학교육기금	45	65	110	19	129
청소년육성기금	747	229	976	222	1,198
관광진흥개발기금	1,685	312	1,997	352	2,349
양곡증권정리기금	57,618	273	57,891	199	58,090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16,273	1,840	18,113	2,010	20,123
종자기금	204	39	243	44	287
농지관리기금	31,319	3,713	35,032	3,912	38,944
산림개발기금	1,125	218	1,343	290	1,633
산업기반기금	7,222	3,020	10,242	2,051	12,293
정보화촉진기금	9,083	5,703	14,786	1,217	16,003
과학기술진흥기금	2,799	1,244	4,043	1,226	5,269
직업훈련촉진기금	2,789	-492	2,297	-589	1,708
진폐기금	9	0	9	0	9
산업재해예방기금	1,157	-311	846	-107	739
장애인고용촉진기금	1,505	248	1,753	81	1,834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5,783	-1,641	4,142	-739	3,403
고용보험기금	3,443	4,674	8,117	4,293	12,410
사회복지사업기금	413	-210	203	-91	112
국민연금기금	161,173	55,620	216,793	59,755	276,548
보훈기금	6,241	413	6,654	644	7,298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63	30	93	0	93
국민주택기금	192,826	32,000	224,826	33,926	258,752
해외건설진흥기금	7	1	8	1	9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 억원)

	1996년	1997년 계획(수정)						증감
	계획(A)	합계	사업비	차입금상환	기금관리금	여유자금	기타지출	
순계	394,943	386,937						-8,006
총계	459,520	462,263	293,316	60,071	1,955	105,901	1,020	2,743
여성발전기금		124				124		124
국민투자기금	4,141	3,154	209	2,885		60		-987
국채관리기금	21,793	35,918	29,625	6,255		38		14,125
외국환평형기금	63,750	31,814	25,313	6,500	1		-31,936	
대외경제협력기금	9,190	10,477	2,553	60	15	7,849		1,287
공공자금관리기금	83,371	92,907	85,101	7,806				9,536
남북협력기금	1,947	1,756	1,095		2	659		-191
군인연금기금	1,033	1,331				1,331		298
군인복지기금	1,390	1,748	1,618			130		358
방위산업육성기금	445	350	350					-95
과학교육기금	70	41	4			37		-29
청소년육성자금	646	739	208			531		93
관광진흥개발기금	642	697	677				20	55
양곡증권정리기금	30,470	15,959	1,676	13,282	1		1,000	-14,511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17,099	17,900	17,650	250				801
종자기금	524	561	289		9	263		37
농지관리기금	9,912	11,176	7,570	2,177	391	1,038		1,264
산림개발기금	328	479	445			34		151
산업기반기금	5,724	4,446	3,862	584				-1,278
정보확충진기금	11,807	13,651	7,905		9	5,737		1,844
과학기술진흥기금	1,411	1,553	1,504		49			142
직업훈련촉진기금	1,905	2,404	1,270		1	1,133		499
진폐기금	162	174	171		3			12
산업재해예방기금	2,186	2,186	2,093		1	92		0
장애인고용촉진기금	2,172	2,482	813		1	1,668		310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15,516	18,936	18,932		4			3,420
고용보험기금	7,509	8,888	4,730		2	4,156		1,379
사회복지사업기금	473	285	172		2	111		-188
국민연금기금	88,763	102,919	22,365		211	80,343		14,156
보훈기금	2,260	2,037	1,489		10	538		-22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51	39	9		1	29		-12
국민주택기금	72,808	75,109	53,595	20,272	1,242			2,301
해외건설진흥기금	22	23	23					1

정부출연현황

(단위 : 억원)

	1995년말 누계	1996년 예산	1997년 예산(안)	1997년말 누계
합계	67,081	8,731	7,281	83,093
여성발전기금	-	-	100	100
국민투자기금	2,131	13	49	2,193
외국환평형기금	11,299	-	-	11,299
대외경제협력기금	3,449	1,300	1,300	6,049
남북협력기금	3,850	1,000	1,000	5,850
군인연금기금	1,057	150	-	-
군인복지기금	-	-	168	168
방위산업육성기금	580	140	140	860
과학교육기금	20	50	-	70
청소년육성기금	200	100	100	400
관광진흥개발기금	401	-	-	401
양곡증권정리기금	24,215	3,357	1,645	29,217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1,475	-	-	1,475
종자기금	126	25	-	151
농지관리기금	10,444	-	-	10,444
산림개발기금	84	-	-	84
산업기반기금	636	100	72	808
정보화기술진흥기금	2,316	2,143	2,342	6,801
과학기술진흥기금	200	-	-	200
진폐기금	676	154	174	1,004
산업재해예방기금	-	90	109	199
장애인고용촉진기금	75	10	10	95
보훈기금	360	63	66	48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35	30	-	65
국민주택기금	3,430	-	-	3,430
해외건설진흥기금	22	6	6	34

재특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현황

(단위 : 억원)

	1996년말 잔고	재특예탁 ¹⁾			1996년말 잔고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²⁾		
		1997년 계획				1997년 계획		
		신규	상환	잔고		신규	상환	잔고
순계	50,970	-	5,350	45,570	111,304	62,400	7,536	166,168
대외경제협력기금	-	-	-	-	1,500	2,000	1,500	2,000
남북협력기금	1,150	-	350	850	906	600	-	1,506
군인연금기금	-	-	-	-	305	500	-	805
과학교육기금	-	-	-	-	74	-	-	74
청소년육성자금	50	-	-	50	188	100	288	
농지관리기금	1,150	-	1,000	150	-	1,000	-	1,000
정보화촉진기금	-	-	-	-	4,590	5,500	4,590	5,500
직업훈련촉진기금	-	-	-	-	1,046	300	1,046	300
장애인고용촉진기금	-	-	-	-	400	800	400	800
산재보상보험기금	1,100	-	-	1,100	-	500	-	500
고용보험기금	-	-	-	-	-	1,000	-	1,000
국민연금기금	47,520	-	6,100	41,420	102,100	50,000	152,100	
보훈기금	-	-	-	-	185	100	-	28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	-	-	10	-	-	10

주: 1) 199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특예탁규모는 4조 8,521억원임.

2) 체신예금(8,000억원)과 기타기금인 공무원연금기금(1,500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1,400억원) 등을 포함한 1997년도 전체 기금 예탁잔고는 20조 1,394억원임.

2. 기금관리기본법 관련규정

가.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 (1)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 (3)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한다.

나.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국회제출 등)

- (1) 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2) 기금관리주체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 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공공기금에 대하여는 소관관서의 장이 이를 한다.

Ⅲ.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

※ 이 자료는 재경경제원 민자유치제도개선기획단에서 11월 4일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I.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고시된 사업은 25개, 26조 5,500억원(총사업비) 수준
- 이 중 시행자 지정 7개 사업(우선협상: 5개 포함),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5개 등 12개 사업 추진중
 - 1995년 사업: 동서 고속철도, 거제~가덕간 연결대교 등 2개 사업을 제외한 10개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 1996년 사업: 가덕도 신항만, 광주시 제2순환도로 등 2개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11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중

(단위: 개)

	사업자지정 (우선협상지정)	기본계획서	기본계획 수립중	계
1995년 사업	6(4)	4	2	12
1996년 사업	1(1)	1	11	13
계	7(5)	5	13	25

2. 민자유치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민자사업은 장기투자사업이므로 막대한 소요 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관건
 - 고금리의 자금조달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면 무상사용기간 연장, 사용료 상승 불가피

	신공항 고속도로(A)	동일수준도로(B)	A/B
통행료 수준	128원/km	67원/km	1.9배

- 건설기간중의 대규모 자금차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낮은 수익성 등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미흡
 - 25개사업 중 신공항 고속도로 1개만 착공
- 민자사업의 시설이용료 등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운영수익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회수 가능성이 중요
 - 높은 시설이용료는 수요감소 등으로 투자비 회수 곤란

Ⅲ.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추진방안

〈기본방향〉

- 민자유치사업은 최장 50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투자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원 방안 강구
 - 장기자금 공급 확대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 확대
 - 시공이윤 부여 등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 적정사용료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재정지원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 부대사업 시행절차 개선 및 범위 확대
 - 토지매입 제한 등 금융상의 제한 완화
 - 민자유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시설이용료에 대한 세제 지원 강구
 - 조기완공 장려제도, 민간재안 활성화 등 제도 개선
- 제1종 민자유치사업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에 이관되고 민자유치사업자는 한시적인 운영권만 갖게 되므로 특별히, 경제력 집중 등과는 상이

1. 금융상의 지원 확대

1. 현금차관도입 허용 대상범위 확대

〈현행제도〉

- 순공사비 1조원 이상 제1종시설 사업에 현금차관 허용
 - 허용한도: 사업당 연 1억달러 이내, 순공사비의 20% 이내
- 1995~1996년 사업 25개 중 순공사비 기준 1조원 이상은 6개 사업에 불과

〈개선방안〉

- 현금차관 허용 범위를 순공사비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6개 사업 추가)
 - 허용한도: 사업당 연 5천만달러, 순공사비 20% 이내
 - 실시협약시(사업자 지정시)의 순공사비 기준
 - ※ 예상도입액 (1999~2002년): 총 약 31억달러(연 8억달러) 수준

2. 제1종시설 토지매입 자금을 대한 대출금지 예외 인정

〈현행제도〉

- 민자유치 사업은 토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제1종시설은 대부분 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나 토지매입비에 대한 대출금지로 자금조달 어려움

※ 서민주택건설용, 6개월 이내에 착공될 공장건설용 등의 토지 매입에 대하여는 대출허용(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선방안〉

- 제1종시설 민자참여기업의 토지매입비에 대한 대출 허용
 - ※ 부대사업 및 제2종시설에 대한 대출 허용 요구는 부동산투기 가능성, 통화관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반영

2. 세제상의 지원 확대

1. 제1종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현행제도〉

- 민자사업시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
 - 건설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용역, 재화 공급시 부가세 납부
 - 따라서 도로 등 제1종시설 준공 후 기부채납시 총사업비의 10%를 부가세로 납부
- 또한 무상사용기간중 징수하는 시설사용료(통행료, 철도요금 등)에 대하여도 10%의 부가세를 납부

〈개선방안〉

- 도로, 철도, 항만 등 제1종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신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10% 인하 효과 (4,410원 → 4,010원 수준)
 - ※ 기부채납시 부가세 면제요구(영세율 적용)는 국가, 지자체, 도공(부가세 면제사업자) 등보다 더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미반영

2. 사회간접자본채권(가칭) 발행

〈현행제도〉

-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5년 미만의 단기채 위주로 운영(1995년 점유율: 94%)되므로 장기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한계
- SOC 민자유치사업은 사업특성상 대규모의 자금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장기채권 발행의 활성화가 긴급

〈개선방안〉

-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 확대 및 세율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가칭) 발행
 - 적용기간 및 세율(신설): 12년 이상 15%
(현재): 5년 이상 30%, 10년 이상 25%
 - 발행자: 민자사업자(또는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 대상사업: 제1종시설
 - ※ 자금출처 조사면제, 무기명 거래 등의 요구는 미반영

3. 등록세 중과 예외 인정

<현행제도>

-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 지역 내의 신설법인에 등록세를 일반세율(자본금의 0.4%)의 5배로 중과(지방세법 제138조)
- 수도권의 SOC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민자법인에 등록세가 중과되어 총사업비 증가 및 사용료 인상
- 결과적으로 당해 물류시설 이용자들의 부담 가중

<개선방안>

- 민자유치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에 신설되는 민자법인에 대해서 등록세 중과 예외 인정

3. 적정수익성 확보

1. 시공이윤 인정 등 적정 수익성 보장

<현행제도>

- 무상사용기간을 정하는 총사업비에 시공이윤을 배제한 순공사비를 계상
- 순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공이윤을 건설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 이윤은 그만큼 감소
- 민자유치사업이 건설업체 위주로 추진되고, 금융기관·시설사용업체 등의 사업참여 부진

<개선방안>

- 순공사비에 「시공이윤」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적정 수익성 보장(민자유치법 시행령 제17조 개정)

2.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

<현행제도>

- 정부 재정지원은 제1종시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인의 해산방지 또는 사용료의 적정수준 유지에 한정(민자유치촉진법 제45조, 시행령 제33조)

<개선방안>

- 민자참여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규정
- 또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규정도 명확화(시행령 개정)

(예시)

- 과도한 용지보상비로 인하여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어 민자유치가 어려울 경우
- 당해 시설 사용료가 동종의 공공시설 사용료보다 현저히 높아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요금수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자체 수익성이 없는 관련사업을 민자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토록 하였을 경우

4. 민자유치 추진절차 개선

1. 민간 제안 활성화

〈현행제도〉

-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민자유치조건을 담은 기본계획으로서 주무관청에서 수립, 민자유치심의위를 거쳐 고시
 - ※ 당해 사업의 개요, 사업신청자의 자격, 부대사업, 정부지원 사항 등을 포함
- 동 계획의 수립이 정부 내에서만 이루어져 기업의 창의적 구상 반영이 곤란
- 대상사업으로 등록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사업 제안 절차 및 참여 가능성이 불투명

〈개선방안〉

-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의 민간 공모제도 도입
 - 민자사업의 개요만 정부가 고시하고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간의 창의와 효율 도입
- 정부 고시가 없는 사업도 민간이 민자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사업 제안권자의 연고권 인정

2. 민자유치 대상사업 범위 확대

- 제1종시설 부대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가
 - ※ 복합단지: 개발지역 내에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 제2조)
- 제2종시설: ASEM 등 국제회의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시설'을 추가

3. 부대사업 추진절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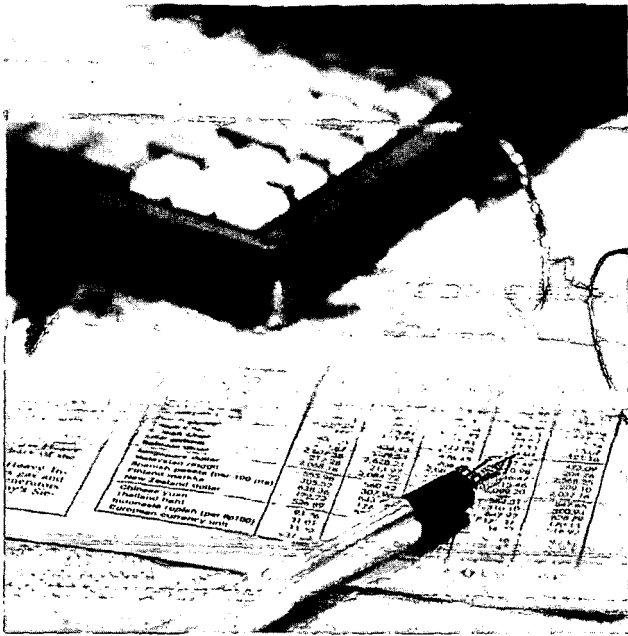
- 택지개발 부대사업의 경우 사업자지정, 개발계획 승인 등은 의제처리 되나, 사업의 첫단계인 예정지구 지정이 의제처리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 택지개발 부대사업 의제처리 범위에 「예정지구지정」을 추가(민자유치법 개정)

4. 조기완공 장려제도 도입

- 현재의 제도에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조기완공하더라도 추가혜택 부여 곤란
- 조기완공에 대해 공기단축기간의 일정부분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유인책을 부여

Ⅳ. 향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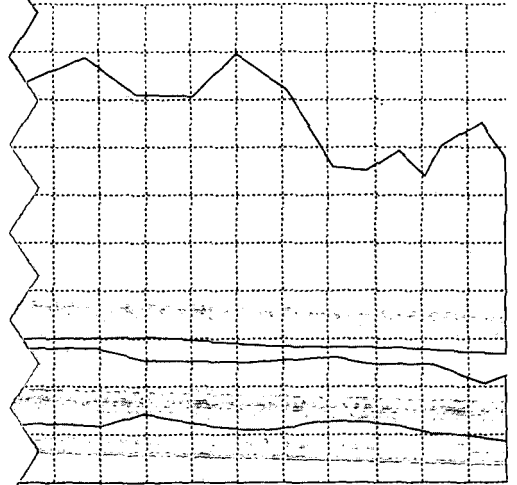
- 추진대책(안) 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1997년 임시국회에 제출
- 다만 조기시행이 필요한 과제는 금년중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



재정통계

소득세관련 통계(1)

1. 소득세 총괄
2. 소득세 미납 및 징수
3.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4. 지역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5. 종합소득세 징정유형별 신고
6. 가정의무자녀 종합소득세 신고
7. 종합소득세 과징신고자의 사의공제



소득세관련 통계(I)

1. 소득세 총괄

	국민총생산(A) (억원)	국세 ¹⁾ (B) (백만원)	소득세(C) (백만원)	국세부담률(B/A) (%)	C/A (%)	C/B (%)
1953	479	2,496	292	5.2	0.6	11.7
1954	662	5,784	755	8.7	1.1	13.1
1955	1,145	12,054	1,609	10.5	1.4	13.4
1956 ²⁾	1,515	-	-	-	-	-
1957	1,971	13,356	1,399	6.8	0.7	10.5
1958	2,047	16,780	1,810	8.2	0.9	10.8
1959	2,147	24,356	2,199	11.3	1.0	9.0
1960	2,449	27,271	2,139	11.1	0.9	7.8
1961	2,942	25,852	2,456	8.8	0.8	9.5
1962	3,555	32,477	4,572	9.1	1.3	14.1
1963	5,029	35,909	5,938	7.1	1.2	16.5
1964	7,163	41,951	8,615	5.9	1.2	20.5
1965	8,057	54,633	11,668	6.8	1.4	21.4
1966	10,370	88,469	20,305	8.5	2.0	23.0
1967	12,812	129,241	30,950	10.1	2.4	23.9
1968	16,529	194,288	47,600	11.8	2.9	24.5
1969	21,553	262,823	69,609	12.2	3.2	26.5
1970	27,884	334,723	84,452	12.0	3.0	25.2
1971	34,191	407,683	107,615	11.9	3.1	26.4
1972	41,935	433,446	104,697	10.3	2.5	24.2
1973	53,775	521,492	123,710	9.7	2.3	23.7
1974	75,917	844,673	164,660	11.1	2.2	19.5

1. 소득세 총괄(계속)

	국민총생산(A) (억원)	국세 ¹⁾ (B) (백만원)	소득세(C) (백만원)	국세부담률(B/A) (%)	C/A (%)	C/B (%)
1975	101,292	1,255,479	198,619	12.4	2.0	15.8
1976	138,997	1,914,747	319,021	13.8	2.3	16.7
1977	177,958	2,402,682	352,715	13.5	2.0	14.7
1978	240,627	3,372,262	467,759	14.0	1.9	13.9
1979	308,721	4,401,708	614,679	14.3	2.0	14.0
1980	368,570	5,297,700	661,374	14.4	1.8	12.5
1981	457,029	6,577,938	886,150	14.4	1.9	13.5
1982	524,605	7,636,435	1,005,516	14.6	1.9	13.2
1983	620,860	9,220,718	1,136,116	14.9	1.8	12.3
1984	710,446	10,053,724	1,229,093	14.2	1.7	12.2
1985	793,011	11,047,426	1,481,558	13.9	1.9	13.4
1986	929,093	12,622,319	1,784,559	13.6	1.9	14.1
1987	1,097,265	15,439,375	2,158,867	14.1	2.0	14.0
1988	1,313,713	18,537,147	2,964,061	14.1	2.3	16.0
1989	1,479,416	21,232,564	3,556,892	14.4	2.4	16.8
1990	1,782,621	26,847,430	4,723,114	15.1	2.6	17.6
1991	2,142,399	30,319,825	6,459,371	14.2	3.0	21.3
1992	2,387,046	35,218,429	8,008,357	14.8	3.4	22.7
1993	2,655,179	39,260,605	9,462,850	14.8	3.6	24.1
1994	3,037,726	47,261,748	11,207,767	15.6	3.7	23.7
1995 ³⁾	3,482,843	50,431,500	13,618,200	14.5	3.9	27.0
1996 ⁴⁾	3,900,200	56,056,791	14,503,388	14.4	3.7	25.9

주: 1) 국세의 경우 내국세, 교통세, 관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합임(1989년 이전은 전매익금도 포함).

2) 1955년은 15개월분이고 1957년은 18개월분임.

3) 1995년은 잠정치임.

4) 1996년은 예산기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국세청 30년사』, 1996.

재정경제원, 『예산개요 참고자료』, 1996.

_____, 『조세개요』, 1996.

2. 소득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징수결정액	부과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¹⁾
1965	11,409	12,060	13,426	11,668	52	340
1966	17,879	21,318	21,883	20,305	128	884
1967	26,625	32,271	34,039	30,950	297	1,024
1968	42,639	50,926	51,220	47,600	597	1,656
1969	58,758	72,094	73,802	69,609	858	1,627
1970	71,597	88,324	90,908	84,452	1,861	2,012
1971	93,539	113,831	115,715	107,615	2,244	3,972
1972	110,756	111,000	117,854	104,697	3,149	3,154
1973	119,652	130,553	140,881	123,710	2,743	4,100
1974	142,054	170,012	171,172	164,660	2,289	3,063
1975	179,315	208,583	211,682	198,619	2,448	7,516
1976	309,247	334,806	116,450	319,021	6,054	9,731
1977	403,913	308,215	158,803	352,715	8,914	18,586
1978	507,602	488,052	179,798	467,759	9,289	11,004
1979	603,827	643,579	207,164	614,679	8,438	20,462
1980	626,954	722,526	277,286	661,374	12,066	49,086
1981	795,015	980,331	978,499	886,150	24,329	69,852
1982	993,009	1,199,159	1,243,815	1,005,516	75,352	118,291
1983	1,084,303	1,303,480	1,346,101	1,136,116	78,699	88,665
1984	1,199,439	1,427,947	1,450,667	1,229,093	84,044	114,810
1985	1,350,537	1,728,660	1,760,676	1,481,558	153,952	93,150
1986	1,603,826	2,017,272	1,966,158	1,784,559	165,193	67,520
1987	1,925,496	2,441,576	—	2,158,867	179,292	103,417
1988	2,271,238	3,404,756	—	2,964,061	166,616	274,079
1989	2,761,640	3,929,698	—	3,556,892	165,932	206,874
1990	3,250,654	5,142,916	—	4,723,114	190,693	229,109
1991	5,853,144	6,873,897	—	6,459,371	111,321	303,205
1992	8,249,600	8,601,334	—	8,008,357	127,378	465,599
1993	8,920,708	10,414,353	—	9,462,850	336,643	614,860
1994	10,655,200	12,134,606	—	11,207,767	420,178	506,661

주: 1) 미수납액=징수결정액-수납액-불납결손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단위: 명, %)

	납세인원 ¹⁾ (A)	과세미달인원 ²⁾ (B)	신고대상과세인 원(C=A-B)	과세인원 비율 (B/A)	신고인원(D)	기장신고인원 (E)	기장신고인원 비율(E/D)	서면결정인원 ³⁾ (F)	서면결정인원 비율(F/E)	실지조사대상 인원(G)	실사인원비율 (G/E)
1983	1,688,802	1,063,079	625,723	37.1	622,262	89,479	14.4	40,851	45.7	48,628	54.3
1984	1,733,907	1,104,184	629,723	36.3	619,777	124,478	20.1	94,843	76.2	29,635	23.8
1985	1,788,651	1,139,802	648,849	36.3	644,312	168,300	26.1	152,339	90.5	15,961	9.5
1986	1,866,447	1,194,642	671,805	36.0	668,851	201,857	30.2	191,536	94.9	10,321	5.1
1987	2,008,049	1,342,394	665,655	33.1	661,906	219,469	33.2	207,433	94.5	12,036	5.5
1988	2,073,895	1,366,747	707,148	34.1	703,666	240,016	34.1	225,910	94.1	14,106	5.9
1989	2,171,912	1,519,036	652,876	30.1	636,633	253,675	39.8	235,290	92.8	18,385	7.2
1990	2,367,012	1,623,513	743,499	31.4	739,807	269,377	36.4	248,388	92.2	20,989	7.8
1991	2,593,388	1,758,651	834,737	32.2	827,764	305,541	36.9	282,057	92.3	23,484	7.7
1992	2,811,346	1,856,023	955,323	34.0	946,365	308,218	32.6	290,593	94.3	17,625	5.7
1993	3,165,119	2,010,119	1,155,000	36.5	1,138,204	332,203	29.2	320,672	96.5	11,531	3.5
1994	3,353,842	2,060,336	1,293,506	38.6	1,266,489	361,313	28.5	347,790	96.3	13,523	3.7

주: 1) 납세인원에는 분리과세소득자,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됨.

2) 과세미달인원은 연간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되는 납세자 인원임.

3) 서면결정인원에는 확정신고결정자가 포함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지역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단위: 명, %)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	시계
1987	납세의무자	2,008,049	615,528	174,795	115,311	77,079	55,377	—	1,038,090
	과세대상자	665,655	268,182	77,319	36,788	23,485	14,153	—	419,927
	과세인원비율	33.1	43.6	44.2	31.9	30.5	25.6	—	40.5
1988	납세의무자	2,073,895	647,009	185,879	120,007	81,114	57,504	53,900	1,145,413
	과세대상자	707,148	283,377	80,104	40,698	25,965	15,850	15,731	461,725
	과세인원비율	34.1	43.8	43.1	33.9	32.0	27.6	29.2	40.3
1989	납세의무자	2,171,912	672,169	194,592	122,836	93,320	59,645	56,433	1,198,995
	과세대상자	652,876	276,503	72,238	36,487	24,578	13,440	14,458	437,704
	과세인원비율	30.1	41.1	37.1	29.7	26.3	22.5	25.6	36.5
1990	납세의무자	2,367,012	697,642	219,641	138,620	104,610	62,760	63,691	1,286,964
	과세대상자	743,499	296,072	84,210	42,360	29,684	17,436	17,180	486,942
	과세인원비율	31.4	42.4	38.3	30.6	28.4	27.8	27.0	37.8
1991	납세의무자	2,593,388	734,187	273,585	152,066	117,444	75,555	68,382	1,421,219
	과세대상자	834,737	319,322	92,552	47,766	34,401	20,742	20,042	534,825
	과세인원비율	31.4	42.4	38.3	30.6	28.4	27.8	27.0	37.8
1992	납세의무자	2,811,346	775,707	228,128	160,316	129,290	85,130	77,349	1,455,920
	과세대상자	955,323	358,967	93,623	53,331	38,106	22,144	23,400	589,571
	과세인원비율	34.0	46.2	41.0	33.3	29.5	26.0	30.2	40.4
1993	납세의무자	3,165,119	885,188	277,522	188,624	137,527	90,695	86,790	1,666,346
	과세대상자	1,155,000	413,879	109,514	63,019	51,705	28,219	28,672	695,008
	과세인원비율	36.5	46.8	39.5	33.4	37.6	31.1	33.0	41.7
1994	납세의무자	3,353,842	900,071	296,831	206,154	144,557	103,476	92,384	1,743,473
	과세대상자	1,293,506	418,165	126,288	74,152	56,237	34,162	32,688	741,692
	과세인원비율	38.6	46.5	42.5	36.0	38.9	33.0	35.4	42.5

4. 지역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계속)

(단위: 명,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도계
1987	납세의무자	233,729	82,604	56,963	136,244	89,646	93,505	113,936	137,817	25,515	969,959
	과세대상자	63,829	20,141	14,267	33,141	21,088	19,868	26,619	39,985	6,790	245,728
	과세인원비율	27.3	24.4	25.0	24.3	23.5	21.2	23.4	29.0	26.6	25.3
1988	납세의무자	234,978	83,783	57,094	84,217	93,383	98,805	118,561	132,649	25,012	928,482
	과세대상자	72,311	20,431	14,531	18,957	21,678	19,898	27,733	42,893	6,991	245,423
	과세인원비율	30.8	24.4	25.5	22.5	23.2	20.1	23.4	32.3	28.0	26.4
1989	납세의무자	255,135	85,953	61,117	86,762	98,867	111,441	116,743	131,482	25,417	972,917
	과세대상자	69,045	16,272	11,820	15,297	17,538	16,759	23,603	38,295	6,543	215,172
	과세인원비율	27.1	18.9	19.3	17.6	17.7	15.0	20.2	29.1	25.7	22.1
1990	납세의무자	299,171	85,473	66,121	96,176	105,513	115,062	118,538	164,300	29,694	1,080,048
	과세대상자	86,209	17,793	14,179	17,950	20,721	19,229	27,464	45,393	7,619	256,557
	과세인원비율	28.8	20.8	21.4	18.7	19.6	16.7	23.2	27.6	25.7	23.8
1991	납세의무자	334,216	93,059	72,610	104,754	110,731	116,561	129,845	176,058	34,335	1,172,169
	과세대상자	99,996	21,833	17,195	21,270	24,433	22,978	32,365	50,351	9,491	299,912
	과세인원비율	29.9	23.5	23.7	20.3	22.1	19.7	24.9	28.6	27.6	25.8
1992	납세의무자	376,085	93,425	77,606	110,145	120,729	122,684	158,031	254,266	42,455	1,355,426
	과세대상자	121,302	23,702	21,266	24,402	27,859	25,731	36,874	72,102	12,514	365,752
	과세인원비율	32.2	25.4	27.4	22.1	23.1	20.9	23.3	28.3	29.5	26.9
1993	납세의무자	467,886	109,934	84,312	118,144	127,970	123,492	157,306	265,214	44,515	1,498,773
	과세대상자	156,574	27,921	25,069	28,163	32,124	27,583	44,660	105,744	12,154	459,992
	과세인원비율	33.5	25.4	29.7	23.8	25.1	22.3	28.4	39.9	27.3	30.7
1994	납세의무자	542,772	123,641	89,239	121,864	133,741	120,196	160,233	280,445	38,238	1,610,369
	과세대상자	210,883	41,129	29,683	31,551	35,926	30,359	47,746	111,229	13,308	551,814
	과세인원비율	38.9	33.3	33.3	25.9	26.9	25.3	29.8	39.7	34.8	34.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종합소득세 결정유형별 신고

(단위: 명, 백만원, %)

		신고인원	신고소득금액	결정세액	인원구성비	세부담구성비
1987	합계	661,906	4,303,221	697,550	100.0	100.0
	기장신고자	219,469	2,482,880	470,242	33.2	67.4
	확정신고결정	117	1,575	301	0.0	0.0
	서면조사결정	207,316	2,385,612	450,618	31.3	64.6
	실지조사결정	12,036	95,693	19,323	1.8	2.8
	무기장신고자	427,324	1,515,196	141,866	64.6	20.3
	추계조사결정	421,272	1,503,459	141,449	63.7	20.2
	자동부과율결정	6,052	11,737	417	0.9	0.1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자	15,113	305,145	85,442	2.3	12.3
1988	합계	703,666	5,006,830	841,632	100.0	100.0
	기장신고자	240,016	2,850,353	554,839	34.1	65.9
	확정신고결정	102	1,241	225	0.0	0.0
	서면조사결정	225,808	2,730,767	530,075	32.1	63.0
	실지조사결정	14,106	118,345	24,539	2.0	2.9
	무기장신고자	441,677	1,745,850	176,127	62.8	20.9
	추계조사결정	437,154	1,734,153	175,400	62.1	20.8
	자동부과율결정	4,523	11,697	727	0.7	0.1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자	21,973	410,627	110,666	3.1	13.2
1989	합계	636,633	5,821,413	915,930	100.0	100.0
	기장신고자	253,675	3,503,087	628,904	39.8	68.7
	확정신고결정	27	630	149	0.0	0.0
	서면조사결정	235,263	3,325,156	595,207	36.9	65.0
	실지조사결정	18,385	177,301	33,548	2.9	3.7
	무기장신고자	368,977	1,950,605	188,977	58.0	20.6
	추계조사결정	366,107	1,940,180	188,331	57.5	20.5
	자동부과율결정	2,870	10,425	646	0.5	0.1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자	13,981	367,721	98,049	2.2	10.7
1990	합계	739,807	7,883,380	1,340,838	100.0	100.0
	기장신고자	269,377	4,688,028	948,869	36.4	70.8
	확정신고결정	217	6,327	1,645	0.0	0.1
	서면조사결정	248,171	4,442,934	894,927	33.6	66.8
	실지조사결정	20,989	238,767	52,297	2.8	3.9
	무기장신고자	450,716	2,733,437	286,609	60.9	21.3
	추계조사결정	448,617	2,725,129	285,755	60.6	21.3
	자동부과율결정	2,099	8,308	854	0.3	0.0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자	19,714	461,915	105,360	2.7	7.9

5. 종합소득세 결정유형별 신고(계속)

(단위: 명, 백만원, %)

		신고인원	신고소득금액	결정세액	인원구성비	세부담구성비
1991	합계	827,764	9,294,849	1,611,032	100.0	100.0
	기장신고자	305,541	5,611,800	1,155,091	36.9	71.7
	확정신고결정	261	10,246	2,866	0.0	0.2
	서면조사결정	281,796	5,341,090	1,092,253	34.0	67.8
	실지조사결정	23,484	260,464	59,972	2.9	3.7
	무기장신고자	505,104	3,147,645	338,635	61.0	21.0
	추계조사결정	504,341	3,142,691	338,310	60.9	21.0
	자동부과율결정	763	4,954	325	0.1	0.0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자	17,119	535,404	117,306	2.1	7.3
1992	합계	946,365	11,711,644	2,107,613	100.0	100.0
	기장신고자	308,218	6,552,154	1,444,897	32.6	68.6
	확정신고결정	31,057	230,281	20,178	3.3	1.0
	서면조사결정	259,536	6,095,496	1,365,532	27.4	64.8
	실지조사결정	17,625	226,377	59,187	1.9	2.8
	무기장신고자	627,100	4,668,660	530,799	66.3	25.2
	추계조사결정	627,100	4,668,660	530,799	66.3	25.2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자	11,047	490,830	131,917	1.1	6.2
	1993	합계	1,138,204	15,821,522	2,670,018	100.0
기장신고자		332,203	8,565,081	1,819,958	29.2	68.2
확정신고결정		30,012	275,050	22,837	2.6	0.9
서면조사결정		290,660	8,076,172	1,735,648	25.6	65.0
실지조사결정		11,531	213,859	61,473	1.0	2.3
무기장신고자		709,551	5,765,566	648,540	62.3	24.3
추계조사결정		709,551	5,765,566	648,540	62.3	24.3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자		96,450	1,490,875	201,520	8.5	7.5
1994		합계	1,266,489	19,116,276	3,129,612	100.0
	기장신고자	361,313	10,293,180	2,131,931	28.5	68.1
	확정신고결정	27,143	261,560	22,297	2.1	0.7
	서면조사결정	320,647	9,730,019	2,026,151	25.3	64.7
	실지조사결정	13,523	301,601	83,483	1.1	2.7
	무기장신고자	805,637	7,079,563	771,306	63.6	24.7
	추계조사결정	805,637	7,079,563	771,306	63.6	24.7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자	99,539	1,743,533	226,375	7.9	7.2

- 주: 1. 확정신고결정: 소득세 신고자가 정부에서 정하는 확정신고결정기준을 이상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따라 소득세를 결정하는 유형임.
 2. 서면조사결정: 정부에서 정하는 서면결정신고기준에 적합하게 소득세를 신고한 기장자에 대하여 신고서류 및 세적관리자료 등에 의한 서면심리만
 으로 소득세를 결정하는 유형임.
 3. 실지조사결정: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가 정부에서 정하는 소득세 신고기준(서면결정신고기준, 확정신고결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장부, 증빙 서류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소득세를 결정하는 유형임.
 4. 추계조사결정: 장부의 증빙을 비치, 기장하지 않은 무기장 신고자에 대하여 업종별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를 추계결정하는 유형임.
 5. 자동부과율결정: 일정규모 이하의 성실한 영세사업자가 정부에서 정하는 자동부과율 이상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소득세를
 결정하는 유형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6. 기장의무자별 종합소득세 신고

(단위: 명, 백만원)

	합 계			복식부기 의무자		
	인원	신고소득금액	결정세액	인원	신고소득금액	결정세액
1983	598,324	2,645,471	288,547	22,403	362,066	72,901
1984	598,100	2,963,107	367,365	28,090	521,003	115,933
1985	621,067	3,313,957	434,709	31,081	678,716	158,265
1986	652,855	3,689,326	513,952	34,502	837,091	210,501
1987	646,793	3,998,076	612,108	38,085	948,709	251,166
1988	681,693	4,596,203	730,966	44,146	1,118,882	294,387
1989	622,652	5,453,692	817,881	55,090	1,485,634	338,752
1990	720,093	7,421,465	1,235,518	70,329	2,177,923	551,557
1991	810,645	8,759,445	1,493,726	87,677	2,767,317	674,393
1992	935,318	11,220,814	1,975,697	97,397	3,173,667	913,724
1993	1,041,754	14,330,647	2,468,498	99,039	3,941,563	1,028,497
1994	1,166,950	17,372,743	2,903,237	115,745	4,793,201	1,202,208

	간이장부 의무자			일기장 의무자		
	인원	신고소득금액	결정세액	인원	신고소득금액	결정세액
1983	46,319	420,570	60,536	529,602	1,862,835	155,110
1984	51,782	504,741	75,808	518,228	1,937,363	175,624
1985	60,986	653,047	93,983	529,000	1,982,194	182,461
1986	71,658	776,851	115,287	546,695	2,075,384	188,164
1987	86,001	968,006	148,075	522,707	2,081,361	212,867
1988	99,653	1,064,622	175,345	537,894	2,412,699	261,234
1989	112,427	1,347,154	200,282	455,135	2,620,904	278,847
1990	133,166	1,881,694	317,256	516,598	3,361,848	366,705
1991	156,000	2,263,307	388,758	566,968	3,728,821	430,575
1992	169,239	2,978,112	516,012	668,682	5,069,035	545,961
1993	190,546	3,604,315	644,498	752,169	6,784,769	795,503
1994	201,913	4,461,362	781,551	849,292	8,118,180	919,478

주: 1. 복식부기 의무자: 1992년까지는 연간수입금액 2억 5천만원 이상자, 1993년부터는 3억원 이상자임.

2. 간이장부 의무자: 1992년까지는 연간수입금액 1억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자, 1993년부터는 1억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자임.

3. 일기장 의무자: 1992년까지는 연간수입금액 1억원 미만자, 1993년부터는 1억 5천만원 미만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단위: 백만원)

	세액공제합계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사업소득세액 공제 ¹⁾	근로소득세액 공제 ²⁾	저축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 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세액공제	기타공제
1983	21,004	8,106	4,534	4,399	1,369	921	196	450	189	840	—
1984	24,278	6,843	7,612	4,880	1,155	1,139	581	735	623	710	—
1985	31,675	8,146	11,989	5,440	1,010	1,079	589	718	310	2,394	—
1986	39,875	6,608	16,115	5,609	1,070	1,262	587	725	304	7,595	—
1987	43,728	7,809	18,347	6,970	1,281	1,608	869	849	648	5,347	—
1988	50,001	10,407	21,464	7,491	1,715	2,062	871	752	288	4,951	—
1989	58,270	17,803	28,275	—	—	2,449	1,136	790	515	7,292	10
1990	105,074	21,678	39,566	—	19,660	3,451	1,705	1,081	414	17,451	68
1991	166,981	62,456	47,153	—	16,335	2,121	1,978	1,174	697	34,216	851
1992	197,298	84,968	54,320	—	20,709	1,711	3,233	1,781	403	28,341	1,832
1993	251,275	86,595	72,511	—	42,646	3,757	4,702	3,775	372	33,670	3,247
1994	298,038	128,443	80,212	—	43,121	3,171	4,341	3,312	498	29,158	5,782

주: 1) 1989년에 폐지됨.

2) 1989년에 폐지되었다가 1990년에 재신설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